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KOPRI**  
극지연구소



# 목 차

I. 개 요 .....	1
II. 남극(Antarctic) .....	3
1. 지리적 특성 .....	3
2. 기후적 특성 .....	4
3. 부존자원 종류 .....	5
4. 국제정치적 특성 .....	6
III. 남극조약과 남극조약협약당사국 .....	7
1. 남극조약 .....	8
2. 남극조약협약당사국 .....	11
IV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 .....	16
1. 참여주체 및 구성 .....	17
2. 회의 운영방법 .....	19
3. 주요 논의 동향 .....	23
V. 우리나라의 활동 .....	25
1. 우리나라 의제 제출 현황 .....	25
2. 우리나라의 활동 방향 .....	29

## 부 록

1. ATCM 절차규칙 (영한대역) .....	32
2. 역대 ATCM 및 한국대표 명단 .....	68
3. ATCM에서 개최되는 기타 회의 .....	74
4. 역대 ATCM 채택 문서 목록 .....	78
5. 제37차 회의 IP 제출(남극장보고과학기지 관련) .....	103

## 표 목차

표 1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 .....	4
표 2 남극의 주요 부존자원 .....	5
표 3 남극조약 가입국 .....	10
표 4 남극조약 관련 기구 .....	10
표 5 남극조약가입국 구성 현황 .....	13
표 6 역대 우리나라 의제 제출 목록 .....	25
표 7 역대 ATCM 및 한국대표 명단 .....	68
표 8 ATCM 외교 회의 .....	74
표 9 ATCM 전문가 회의 .....	75
표 10 특별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	76
표 11 역대 ATCM 채택 문서 목록 .....	78

## 그림 목차

그림 1	남극의 주요 수산생물 및 광물자원분포 .....	5
그림 2	남극조약체제 구성 .....	8
그림 3	남극조약협약당사국 지위 취득 절차 .....	11
그림 4	제19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1997.서울) .....	16
그림 5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참여주체 .....	17
그림 6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의제 제출 절차 .....	21
그림 7	우리나라 제출의제 현황(제14차~37차) .....	28





# 1. 개요

남극은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원시대륙으로 오랜 시간동안 인간 활동이 제한되어 왔다. 탐험의 대상이었던 남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남극에 대한 정치적·전략적·과학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조사·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1957년부터 1958년에 걸친 국제지구물리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 기간 동안 12개국 67개 연구기관에서 5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공동 연구·탐사가 진행되어 남극을 무대로 빙하학·기상학·해양학 및 해양생물학 등 11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방대한 지구물리적 과학 자료의 수집과 많은 이론 및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하는 등 성공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오자 남극에 대한 지정학적·경제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짐은 남극에서의 인간 활동 증가 및 각국의 영유권 주장과 같은 갈등 야기의 계기가 되면서 남극조약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1959년 12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된 남극조약은 모든 참여국들이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유예하고, 과학적·평화적인 목적으로만 남극을 이용하도록 체결한 국가 간 조약이다. 남극조약 제9조에서는 조약협약 당사국들이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ATCM)라 하며, 남극과 관련된 정보 교환 및 주요 정책의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는 1961년 7월 호주 캔버라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2014년 제37차 회의까지 진행되었다. 이 회의는 남극에 대한 정보교환 및 남극대륙에서의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논의와 남극조약의 목적 및 원칙에 부합하는 각 국가들의 활동을 논의하고 권고 및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의에서 채택된 조치(Measure)들은 남극에 대한 규정 및 운영규범을 구성하기 때문에 남극에서의 각국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남극조약에 가입하였으며, 1988년 2월 남극세종 과학기지를 준공하고 이를 통한 실질적 남극활동을 기반으로 1989년 10월 남극조약협약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또한 제14차 회의부터 정부·연구계·학계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을 알리고, 이러한 우리의 활동과 노력이 남극 보존과 과학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본서는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 대한 자료집으로 회의의 개요와 운영방법, 우리나라의 참가 실적을 설명하고,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와 남극조약협약당사국에 대한 내용을 함께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II. 남극(Antarctic)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만년빙으로 덮여있는 남극대륙과 그 주변의 남빙양(Southern Ocean)<sup>1)</sup>을 포함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20세기 초, 남극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되면서 국제사회는 남극을 공동연구 및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남극에서의 인간 활동범위와 조사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초학문 분야 간 융합연구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 1. 지리적 특성

남극조약은 남극을 남위 60° 이남의 바다와 남극대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극의 면적은 섬과 빙붕(Ice shelf)을 합쳐 1,380만km<sup>2</sup>으로 남극대륙의 99.7%가 평균 2,160km<sup>2</sup>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고, 얼음의 양은 3,000만km<sup>3</sup>이다. 남극해의 평균 면적은 7,500만km<sup>2</sup>로 바다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

1) 1999년 5월 국제수로기구가 발표한 새로운 정의에 따라 남빙양은 남위 60° 이남의 바다를 의미한다.

## 2. 기후적 특성

남극내륙지역의 경우 연평균 기온이  $-30\sim 40^{\circ}\text{C}$ , 연평균 강수량이  $30\sim 70\text{mm}$ 로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이 때문에 1년 중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4개월 정도로 매우 한시적이고, 접근 가능 지역도 제한적이다.

【표 1】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

구분	남 극	북 극
		
지형	남위 $60^{\circ}$ 이남의 땅과 바다	유라시아 및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둘러싸인 대양
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피는 식물 2종, 지의류 300~400여종, 선태류 125종의 식물 분포</li> <li>• 펭귄, 고래, 해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피는 식물 1,800여종을 포함하여 약 4,700여종의 식물 분포</li> <li>• 북극곰, 해마(海馬), 여우, 순록, 고래, 해표</li> </ul>
영토권	없음	북극권 8개국 <sup>2)</sup>
조약	남극조약	별도의 국제 조약 없음
협약체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북극이사회, 북극과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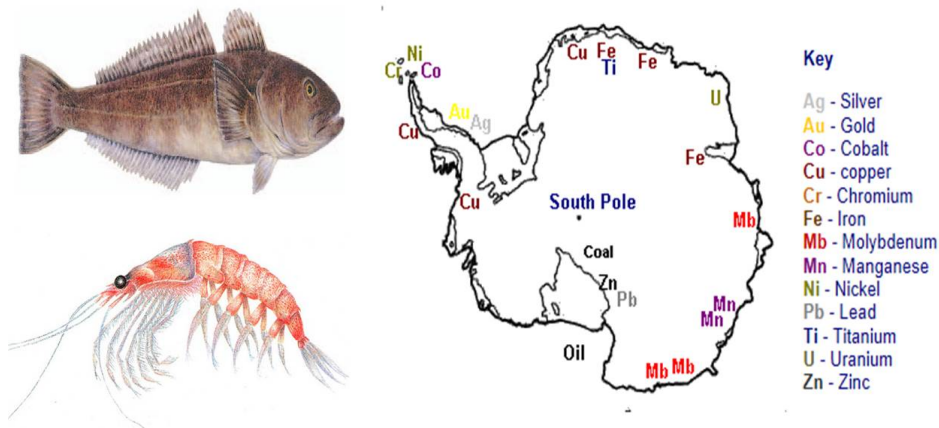
\* 남극, 북극 지도 출처: [www.geographicguide.net](http://www.geographicguide.net)

### 3. 부존자원 종류

【표 2】 남극의 주요 부존자원<sup>3)</sup>

구분	지역	자원의 종류	추정 매장량
수산생물 자원	남극해	크릴,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남극대구 등 8종	5~5.7억톤
광물자원	대륙붕	석유와 천연가스	450억 배럴 이상
	찰스산맥	철광석	
	남극반도	구리, 몰리브덴	
	듀팩(Defec) 단층지괴	백금, 니켈, 구리, 코발트	
기타	남극횡단산맥	석탄, 구리, 납, 아연, 은, 금, 주석, 흑연, 운모	
	남극해안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	
	남극빙산	수자원	전 세계 담수총량의 70%
	대륙전체	식품 저장장소	

【그림 1】 남극의 주요 수산생물 및 광물자원 분포<sup>4)</sup>



2)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미국

3) 극지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opri.re.kr>) 참조

4)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좌측 위): [www.nmfs.noaa.gov](http://www.nmfs.noaa.gov), 크릴(좌측 아래): [www.krillfacts.org](http://www.krillfacts.org), 광물자원 분포: [www.coolantarctica.com](http://www.coolantarctica.com)

#### 4. 국제정치적 특성

19세기 초 남극대륙의 발견과 1911년 아문센(Roald Engelbregt Graving Amundsen)의 남극점 도달을 계기로 남극에 대한 소규모의 탐사가 이뤄지게 되었다. 양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대규모 조사를 통해 남극의 알려지지 않은 해안선의 발견과 항공사진 자료를 확보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남극 연구 활동을 개인별 혹은 국가별 활동인 아닌 국제적인 성격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1958년에는 국제과학연맹 산하 남극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SCAR)가 설립되어 국가 간 자료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공동의 연구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남극을 과학발전을 위한 평화적 장소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과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치적 문제의 해결 방안이 요구되었다.

한편,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와 포경산업이 활발했던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은 남극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였는데, 미국, 러시아 등 영유권 주장 유보국들이 지속적인 남극 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남극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남극 내 각 국가들의 활동 증가와 이에 따른 갈등의 양상이 계기가 되어 1959년 12월 1일 미국의 제의로 남극조약이 체결되었고, 1961년 6월 23일 체결에 참여했던 원서명국 12개국<sup>5)</sup>이 남극조약을 발효시켰다. 2014년 현재 남극조약에는 원서명국을 포함하여 총 50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

5) 영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칠레,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舊 소련),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 Ⅲ. 남극조약과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남극조약을 통해 남극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인간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체제의 기본으로 삼으며, 이로부터 파생된 기구 및 제도, 국제 문서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라 한다.

남극조약체제는 제도와 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제도는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을 중심으로 남극물개보존협약(CCAS)<sup>6)</sup>,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sup>7)</sup>, 남극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sup>8)</sup>,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권고문, 남극환경보호의정서<sup>9)</sup> 등이 있다. 남극조약체제를 이루는 기구는 다시 옵서버와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옵서버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과학위원회(SCCMLR), 남극과학위원회(SCAR)<sup>10)</sup>, 국가남극프로그램운영자위원회(COMNAP)<sup>11)</sup> 등이 있다. 전문가그룹은 남극남빙양연합(ASOC)<sup>12)</sup>, 국제자연보존연맹(IUCN)<sup>13)</sup>, 국제남극관광협회(IAATO)<sup>14)</sup>, 세계기상기구(WMO)<sup>15)</sup>, 국제수로기구(IHO)<sup>16)</sup>, 국제해사기구(IMO)<sup>17)</sup>,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sup>18)</sup>, 유엔환경계획(UNEP)<sup>19)</sup> 등이 있다.

---

6)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7)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8) Agree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Fauna and Flora

9)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Madrid Protocol

10)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11) The Council Of Managers of National Antarctic Programs

12) 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

13)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1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arctic Tourist Operators

15)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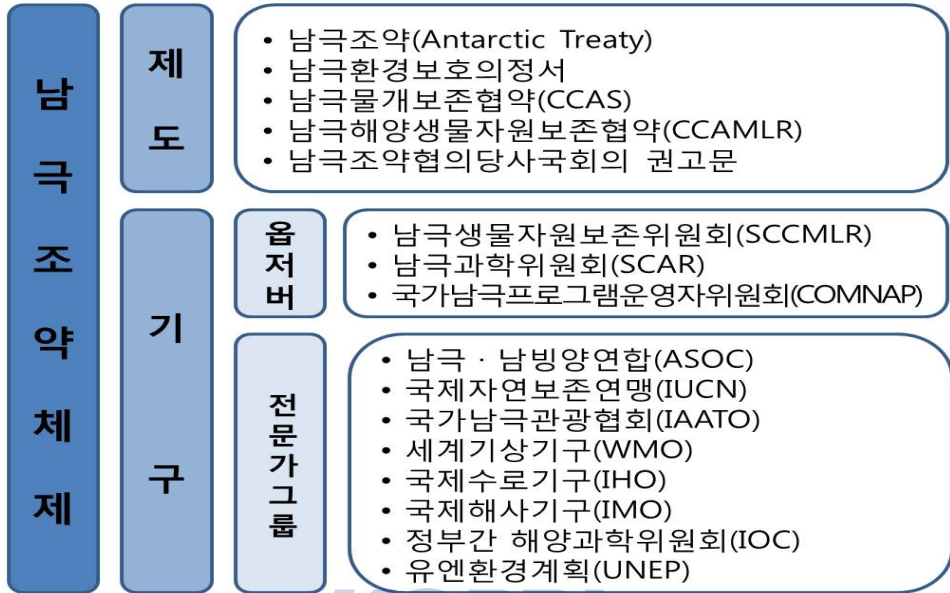
16)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17)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8)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19)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그림 2】 남극조약체제 구성<sup>20)</sup>



## 1. 남극조약

1959년 12월 1일 미국의 제의에 따라 12개 원초서명국들은 남극조약을 체결하고, 1961년 6월 23일 발효 되었다. 전문을 포함하여 모두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극조약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남극 과학연구의 완전한 자유보장과, 남극에 대한 기존의 영유권 주장을 유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남극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군사시설·기지의 설치, 군사훈련 등 군사적 조치 금지와 핵폭발이나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금하며, 다만 과학적 연구 및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 요원

20) 극지방문편람(극지연구소) 참조

및 장비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둘째, 남극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과학조사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조사계획 관련 정보와 참여 과학자, 조사결과 등을 상호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유보하는 것으로 이는 남극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남극조약이 효력이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관할권 주장을 할 수 없고, 남극조약의 체결 행위가 기존 관할권의 주장 및 그에 대한 근거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타국의 관할권 주장에 대한 인정·불인정의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 또한 아니다.

#### 【남극조약 14개 조문의 주요 내용】<sup>21)</sup>

- 제1조 남극지역의 평화적 목적 / 과학 연구만 허용, 단 이를 위한 군사지원 이외에 군사행위 금지
- 제2조 과학조사의 자유보장과 국제협력 지속
- 제3조 과학 활동의 정보교환과 과학자 교류와 과학 관측/ 결과의 교환과 자유로운 이용
- 제4조 남극지역의 영토주권 또는 영토에 관한 영유권 주장의 동결
- 제5조 핵폭발과 방사선 폐기물 처분 금지
- 제6조 조약 적용 지역(남위 60° 이남의 모든 빙원을 포함한 지역) 명시
- 제7조 남극의 모든 지역과 타국 기지에 대한 완전한 자유 사찰 허용
- 제8조 사찰요원과 교류과학자에 대한 재판권소재 명시
- 제9조 협의당사국 권한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설명
- 제10조 UN헌장 준수 의무 명기
- 제11조 체약국 간 분쟁해결의 평화스러운 협의
- 제12조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조약을 수정하고 개정 가능성 명시
- 제13조 조약의 비준과 가입절차
- 제14조 조약의 정문(영, 불, 노, 스페인어) 작성

21) 남극조약 전문은 부록 4 참조

(2) 조약가입국 및 관련 기구

【표 3】 남극조약 가입국

구분		국가명
협약당사국 (29) (Consultative Parties)	원서명국 (12)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유권 주장국)
		미국, 러시아 (영유권 유보국)
	추후 가입국 (17)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영유권 비주장국)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체코, 에콰도르, 핀란드, 독일, 인도,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비협약당사국(21) (Non-Consultative Parties)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북한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모나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파푸아 뉴 기니,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베네수엘라

【표 4】 남극조약 관련 기구<sup>22)</sup>

명 칭	가입국 수	한국 가입	주요역할	비고
남극조약	50	1986. 11.28.	조약정신 준수	
남극조약협약당사국	29	1989. 10.18	관련제도 논의 및 결정	실질적 과학연구가 지위획득의 선결 조건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CCAMLR)	36 <sup>23)</sup>	1985. 3.28.	해양생물 자원 보존	
남극연구과학위원회 (SCAR)	31 <sup>24)</sup>	1987. 12.17	과학연구 조언	우리나라는 1990년 정회원으로 승격
남극광물자원활동 규제협약 (CRAMRA) <sup>25)</sup>		-	광물자원 개발 협의	향후 50년간 자원개발활동 금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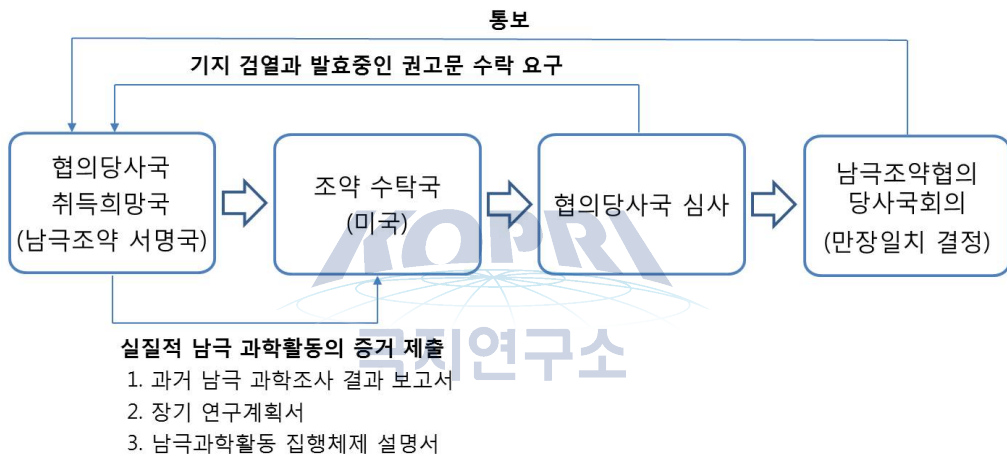
22) 극지정책자료 2008-3(극지연구소)



## 2.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남극조약 가입국 중 원초서명국과 실질적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명국을 협의당사국이라 하며, 이들은 남극조약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남극조약 서명국이라든가 남극에서의 과학 활동의 실질적 증거를 제출하고, 기 협의당사국의 심사 및 남극조약특별협의회의 결정을 거쳐야만 협의당사국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림 3】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 취득 절차<sup>26)</sup>



- 2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위원회의 공식 회원국인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칠레, 중국,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나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등 25개국과 위원회 회원이 아닌 조약만 가입한 불가리아, 캐나다, 쿡 제도, 핀란드, 그리스, 모리셔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바누아투 등 11개국 이다. (<https://www.ccamlr.org>)
- 24)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정회원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폴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등 31개국이 있고, 이 외에 준회원국은 덴마크, 모나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루마니아,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 있다. (<http://www.scar.org>)
- 25) 남극자원활동규제협약(the Convention of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 Activities, CRAMRA)은 1982, 1988년 두 차례의 협상을 통해 1988년 체결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못하였다.
- 26) 극지정책자료 2008-3(극지연구소)

2014년 현재 남극조약 가입국은 총 50개국으로 29개의 협의당사국과 21개의 비협의당사국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남극조약에 1986년 11월 28일 33번째로 가입하였고, 1989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당사국들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참가하여 남극 관련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남극 관련 주요 이슈의 논의와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협의당사국 만이 가능하다. 협의당사국들은 남극조약 관련으로 결정 되는 모든 사항을 전원합의체로 채택하고, 남극조약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한 각국 정부들의 남극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주요 논의 내용】 27)

- (1) 연구 협력(scientific cooperation)
- (2) 남극환경 보호(protection of the Antarctic environment)
- (3) 동·식물 보호(conservation of plants and animals)
- (4) 역사 유적지 보존(preservation of historic sites)
- (5) 보호구역 관리 및 지명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 (6) 남극지역 관광 감독(management of tourism)
- (7) 정보교환(information exchange)
- (8) 기후데이터 수집(collection of meteorological data)
- (9) 수로 도표화(hydrographic charting)
- (10) 보급협력 및 통신·안전  
(logistic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s and safety)

---

27) 극지정책자료 2008-3(극지연구소)




【표 5】 남극조약가입국 구성 현황<sup>28)</sup>

(2014년 7월 현재)

번호	국 가	가입일	협약당사국 취득일	비고
1	 Argentina	1961.06.23.	1961.06.23.	협약당사국 Consultative Party
2	 Australia	1961.06.23.	1961.06.23.	
3	 Belgium	1961.06.23.	1961.06.23.	
4	 Brazil	1975.03.16.	1983.09.27.	
5	 Bulgaria	1978.09.11.	1998.06.05	
6	 Chile	1961.06.23.	1961.06.23.	
7	 China	1983.06.08.	1985.10.07.	
8	 Czech Republic	1962.06.14.	2014.04.01.	
9	 Ecuador	1987.09.15.	1990.11.19	
10	 Finland	1984.05.15.	1989.10.20.	
11	 France	1961.06.23.	1961.06.23.	
12	 Germany	1979.02.05.	1981.03.03.	
13	 India	1983.08.19.	1983.09.12.	
14	 Italy	1981.03.18.	1987.10.05.	
15	 Japan	1961.06.23.	1961.06.23.	
16	 Korea(ROK)	1986.11.28.	1989.10.09.	
17	 Netherlands	1967.03.30.	1990.11.19.	
18	 New Zealand	1961.06.23.	1961.06.23.	
19	 Norway	1961.06.23.	1961.06.23.	

28) 남극조약사무국 홈페이지 참조(<http://www.ats.aq>)

번호	국 가	가입일	협약당사국 취득일	비고
20	 Peru	1981.04.10.	1989.10.09.	
21	 Poland	1961.06.23.	1977.06.29.	
22	 Russian Federation	1961.06.23.	1961.06.23.	
23	 South Africa	1961.06.23.	1961.06.23.	
24	 Spain	1982.03.31.	1988.09.21.	
25	 Sweden	1984.04.24.	1988.09.21.	
26	 Ukraine	1992.10.28.	2004.06.4.	
27	 United Kingdom	1961.06.23.	1961.06.23.	
28	 United States	1961.06.23.	1961.06.23.	
29	 Uruguay	1980.01.11.	1985.10.7.	
30	 Austria	1987.08.25.		
31	 Belarus	2006.12.27.		
32	 Canada	1988.03.04.		
33	 Colombia	1989.01.31.		
34	 Cuba	1984.08.16.		
35	 Denmark	1965.03.20.		
36	 Estonia	2011.05.17.	-	비협약당사국 Non- Consultative Party
37	 Greece	1987.01.08.		
38	 Guatemala	1991.07.31.		
39	 Hungary	1984.01.27.		
40	 Korea (DPRK)	1987.01.21.		
41	 Malaysia	2011.10.31.		

번호	국 가	가입일	협약당사국 취득일	비고
42	 Monaco	2008.05.31.		
43	 Pakistan	2012.03.01.		
44	 Papua New Guinea	1981.03.16.		
45	 Portugal	2010.01.29.		
46	 Romania	1971.09.15.		
47	 Slovak Republic	1993.01.01.		
48	 Switzerland	1990.11.15.		
49	 Turkey	1996.01.24.		
50	 Venezuela	1999.03.24.		



#### IV.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sup>29)</sup>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이하 ATCM)는 국가 차원의 남극 연구·활동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간 회의로서, 회의에서 논의 및 결정되는 사항이 각 국의 남극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ATCM은 1961년 호주 캔버라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1983년 이전까지 격년으로 열리다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정기회의와 별도로 특정한 사안의 논의를 위한 특별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와 전문가회의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위원회(Committee)와 다양한 의제들의 논의를 위하여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회의 운영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03년 이후부터는 남극조약 사무국이 ATCM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정보 교환을 위하여 회의 개최일정 및 각 국의 제안, 결과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제19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1997.서울)<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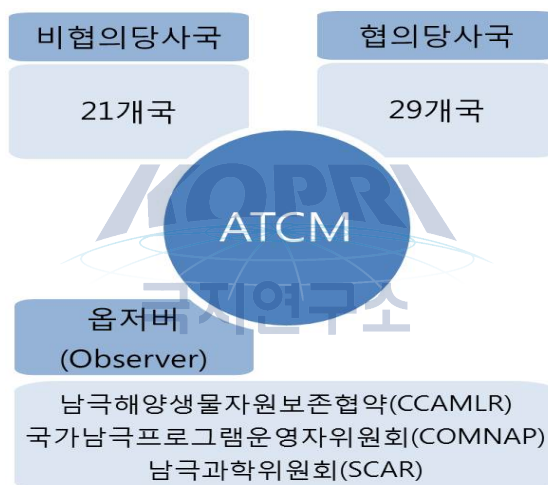
29) 본 장은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개정 절차규칙(Revised Rules of Procedure 2011)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부록 1. 참조

30) 극지연구체험단 공식카페 눈사람클럽 <http://cafe.naver.com/poletopole2>

## 1. 참여주체 및 구성

ATCM 절차 규칙에서는 회의 참여 권한이 있는 당사국을 협의당사국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된 기타 당사국들을 비협의당사국이라 지칭하며 각각 대표를 구성하여 회의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칙 제31조에 따라 회의에 초대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남극연구과학위원회, 남극국가운영자위원회 등을 옵저버라 하고, 이들 역시 대표가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그림 5]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참여주체**



### (1) 대표(대표단)

협의당사국의 대표는 각 협의당사국들의 대표 및 대리대표, 자문단, 기타 각국이 필요하다 여기는 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으로 한다. 비협의당사국의 대표는 각 비협의당사국들의 대표 및 기타 각 국이 필요하다고 여긴 자로 구성된 대표단으로 하되, 그 수적 제한과 관련하여 협의당사국의 협의를 거쳐 개최국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옵저버의 대표는 각 옵저버의 의장(회장) 또는 이를 위해 지명된 기타의 자로 한다.

대표단이 구성되면 ATCM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구성원들의 성명을 개최국에 전달하여야 하고, 개최국은 성명 기재함에 있어 개최국 언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협의당사국-비협의당사국-옵저버 순으로 한다.

## (2) 의장

개최국의 대표는 ATCM의 임시의장을 맡아 의장의 선출 전까지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의장은 본회의(Plenary Session) 중에 협의당사국의 대표 중에서 선출되고, 선출되지 아니한 협의당사국의 대표들은 순차적으로 부의장이 된다.

의장은 일반적으로 본회의를 주재하고, ATCM 절차 규칙에 따라 ATCM의 질서를 유지하는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또한 부여된 권한 하에서 자신이 참여하는 회의, 위원회, 워킹그룹의 연사를 초청할 수 있고, 각 연사에 게 할당되는 시간 및 발언 횟수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발언의 의사를 표시한 협의당사국의 대표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의장의 부재 시에는 부의장이 각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 (3) 비협의당사국

비협의당사국들은 1983년부터 회의 참석이 허용되었으나, 의사 결정의 참여권은 부여되지 않고 있다. 비협의당사국의 대표는 ATCM의 본회의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협의당사국들이 구성하는 모든 공식 위원회 및 워킹그룹에 참석할 수 있고, 회의와 관련된 사안의 문서들을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 (4) 옵저버 및 전문가그룹

옵저버는 각 옵저버의 역할 범위 내 사항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ATCM에 참석할 수 있다. 이들은 각 사안과 관련된 보고서 또는 문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의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남극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들인 전문가그룹은 ATCM의 결과 또는 의제로 채택된 남극조약체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옵저버와 전문가그룹은 비협의당사국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제한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회의, 위원회, 워킹그룹에 참여할 수 있고, 의사결정 권한은 없다.



## 2. 회의 운영방법

ATCM 본회의는 공개 개최가 원칙이고, 회의에 참석한 협의당사국 대표의 3분의 2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기타 다른 회의는 협의당사국들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의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4개국어로, 회의에서는 다른 언어로 발언은 가능하나, 공식 언어 중의 하나의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회의의 최종보고서(Final Report)는 투표권을 가진 협의당사국 대표의 과반수이상의 승인으로 채택되며, 채택된 최종보고서는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한 협의당사국 및 비협의당사국의 정부에 전송하여야 한다.

## (1) 의제 제출

개최국은 회의 개최 210일 전까지 모든 계약가입국들에게 예비의제 제출에 대한 공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받은 조약가입국들은 회의 개최 180일 전까지 예비의제를 개최국에 통지하고, 이를 위한 추가적 사항들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개최국은 이전 회의에서 결정된 예비의제와 통지받은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임시의제를 준비하여 이를 회의 개최 120일 전에 다시 모든 조약가입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최국이 준비한 다음 회의의 예비의제가 회의결과로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최종보고서에 첨부한다.

## (2) 회의에 제출되는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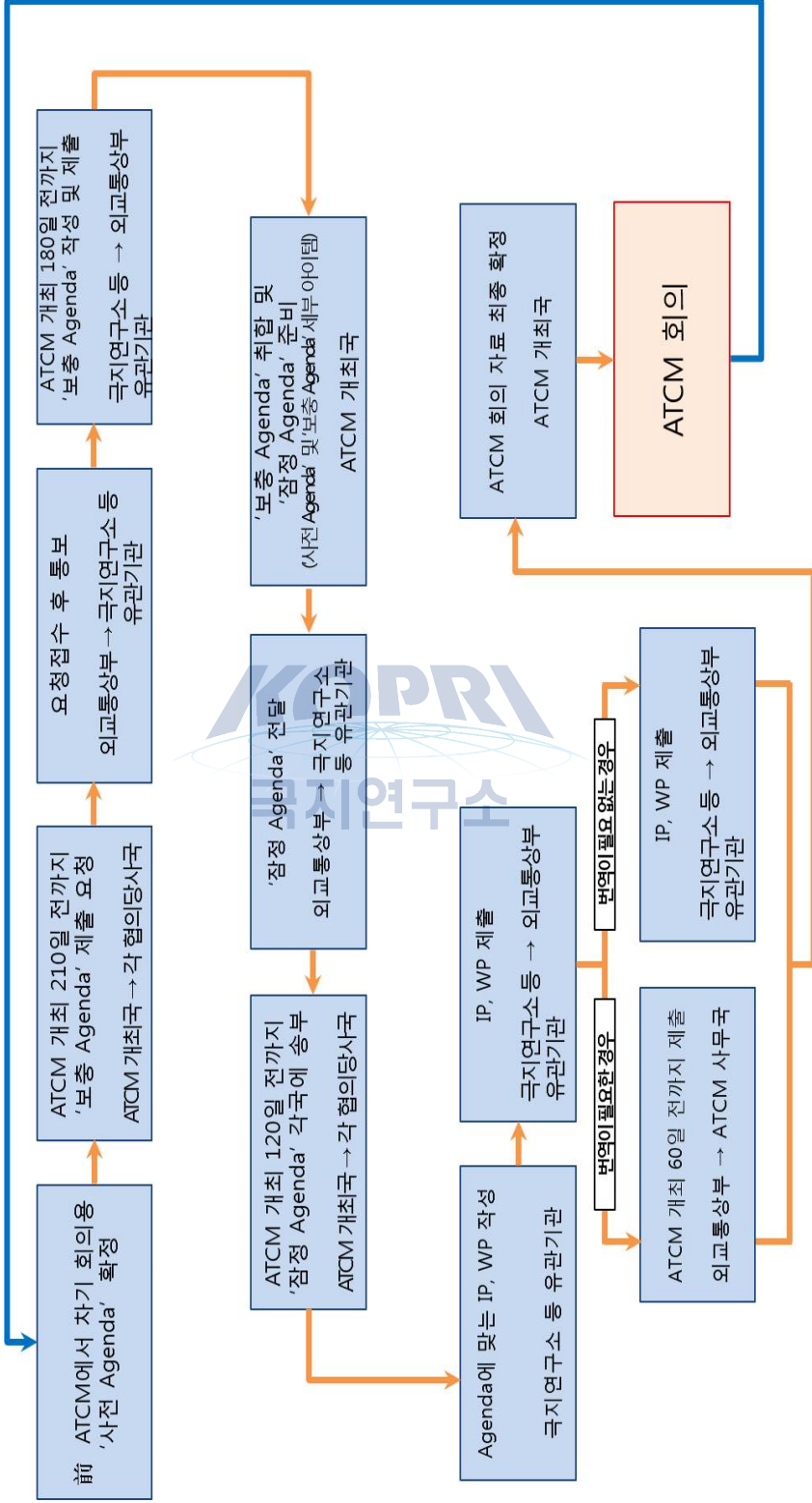
ATCM 참여주체들이 제출하는 문서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작업 문서(WP: Working Papers)는 협의당사국 또는 옵저버가 관련 의제에 대해 제출하는 연구문서로서 Resolution, Decision, Measure 등의 결의안을 담고 있다.

사무국문서(SP: Secretariat Papers)는 사무총장에 관한 사항 또는 사무국 운영의 보고를 위한 문서들을 말한다.

정보문서(IP: Information Papers)는 협의당사국 또는 옵저버가 제출하는 문서로 작업문서를 지지하는 정보의 제공과 회의의제 관련 문서, 그리고 비협의당사국 및 전문가그룹이 제출한 회의 의제 관련 정보제공 문서이다.

배경문서(BP: Background Papers)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문서로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

【그림 6】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의 의제 제출 절차



### (3) 의사결정 유형

ATCM의 결과는 그 성격에 따라 조치(Measures), 결정(Decisions), 결의(Resolution) 등 총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모두는 협의당사국들의 전원 합의로 채택되어야 한다.

제19차 회의 이전까지 남극에 대한 규정 및 운영규범을 구성하는 회의의 결정들을 권고안(Recommendation)로 지칭하였다. 그러나 동 회의에서 규제 및 제재수단과 관련 없는 조치의 채택이 합의 되어, 권고안이 협의당사국들의 승인 없이도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조치와 권고안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이의 구분을 위하여 첫째, 회의에 참석한 협의당사국 대표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되어 구속력을 갖는 규정을 ‘조치(Measures)’라하고, 둘째 ATCM 및 사무국의 운영 및 내부 이슈 등 관련된 것으로 차후에 다시 논의 및 채택될 수 있는 비강제적 규정을 ‘결정(Decisions)’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채택된 결정을 포함하고 있는 권고적 성격의 규정을 ‘결의(Resolution)’라 한다.

당사국회의에서 다뤄진 논의내용과 결과는 최종보고서(Final Report)로서 공지 되어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회의록과 부속서(Annex)로 구성되는데, 협의당사국 대표의 과반 수 이상의 승인으로 채택 된다.

사무국장은 최종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협의당사국 및 회의에 참석한 비협의당사국 정부로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회의가 종료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조치와 결의 및 결정을 공지하고,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작성된 최종보고서의 사본을 각 정부에 발송하여야 한다.

### 3. 주요 논의 동향

ATCM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의제와 조치들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 째, 회의 운영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의제선정, 개최시기 및 장소의 선정, 회의의 원활한 진행, 사무국 운영과 사무총장 선임 등에 관한 내용이다. 두 번째는 남극에서의 과학 연구를 위한 보급·통신·기상·항공기 등의 사용, 긴급구조, 기지 설치를 위한 국제협력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다. 세 번째는 회기마다 벌어지는 사고에 대한 대책 및 권고에 관한 내용이고, 마지막은 남극 환경보호와 자원보호를 위한 제반조치 및 권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 관한 내용이다.<sup>31)</sup>

그동안 ATCM에서는 국제사회의 남극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 남극조약 회원국 간 차별적 공동책임을 둘러싼 갈등 및 그 해결방안, 각국의 협력 방안과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를 통하여 최근 남극에서의 인간 활동에 대한 규제가 체계화 되어가며 인간 활동으로 인한 남극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두드러지고 있다.<sup>32)</sup>

최근의 남극의 환경 보호와 관련된 의제들은 환경보호위원회(the Committe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CEP)의 활동을 통해 상정된 이슈들이다. 위원회는 1998년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sup>33)</sup>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구성되었는데, 각 당사국들에게 환경보호 협약의 준수와 관련된 권고안 마련과 이를 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보호구역의 관리, 기지건설 및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제 제출을 통하여 위원회를 통한 환경관리와 그의 적용 등을 논의한다.

31) 본 절은 극지연구소 정책연구과제인 “국제사회 Governance의 변화와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ATCM) 40년”을 참고 하여 작성하였다.

32) 극지정책자료 2009-2 참조(극지연구소)

33) 남극 고유의 환경 및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1991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1차 특별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남극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위하여 남극조약사무국은 전자정보교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이 시스템의 정착과 효율적인 공유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2009년 제32차 회의에서는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된 바 있다.

한편 남극조약지역 내 어업활동과 쇄빙선을 이용한 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안전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사전예방 및 구조 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쇄빙선 운항과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가 북극지역을 운항하는 선박과 그 운항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Polar Code(극지방 선박운항코드)'가 2004년 ATCM에서 남극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됨에 따라 2017년 발표를 위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sup>34)</sup>

남극조약지역의 생물다양성 및 그 잠재가치 탐사와 정보 수집을 위한 생물자원탐사(Bio-prospecting)에 대하여 1999년 제23차 회의부터 그 적용범위와 환경적 영향, 이익배분과 공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기간을 거치면서 연구문서 및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이 이루어 졌고, 2009년 ATCM에서 남극생물자원 탐사와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동 결의안에 따라 생물자원탐사 문제는 남극조약체제 내에서 핵심 논의사항으로 다뤄지고 있다.<sup>35)</sup>

---

34) 2014년도 제2차 극지법연구회 발표자료인 'IMO Polar Code(한국선급, 서대원)'를 인용하였다.

35) 2013년도 제4차 극지법연구회 발표자료인 '남극조약체제 하의 Bioprospectig 논의에 관한 고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를 인용하였다.

## V. 우리나라의 활동

### 1. 우리나라 의제 제출 현황<sup>36)</sup>

우리나라는 1987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제14차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래 2014년 제37차 회의까지 지속적인 참가를 통해 남극 활동 및 연구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타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 실적, 과학기지의 운영과 관리, 남극교육활동, 쉐빙연구선 아라온호의 건조와 운항, 남극 제2기지 건설 등에 대한 의제를 제출 하여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을 알리고 당사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표 6】 역대 우리나라 의제 제출 목록

회차	제출문서	주요 내용
14	IP	ATCM 관련 한국 담당기관
16	IP	개회사(안현원/스위스한국대사)
17	IP	개회사(이기주/외무부)
18	WP	남극조약 제7조 따른 검사
	IP	남극조약 제7조 관련 한-영-이탈리아 공동 보고서
	IP	한-영-이탈리아 공동탐사팀 체크리스트
20	IP	한국 정부대표 개회사
	IP	개회사(전영덕/외무부)
21	IP	킹조지섬의 남극세종과학기지 환경영향평가
	IP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의 국제 공동 과학연구 활동
	IP	개회사(오윤경/한국대사관)

36) 2009년~2014년까지 각 회의를 참가한 극지연구소 전문가의 출장보고서를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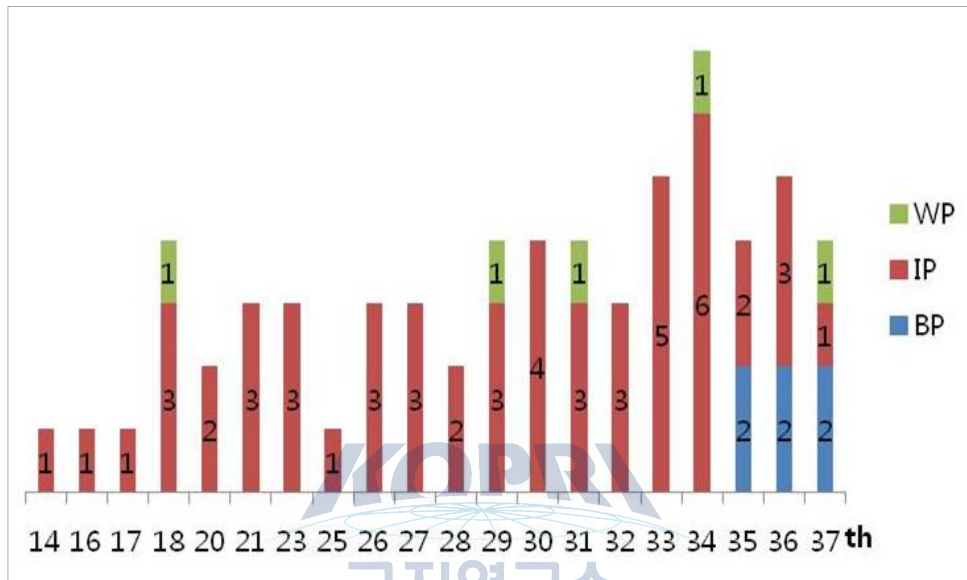
회차	제출문서	주요 내용
23	IP	남극에서의 국제 공동 과학연구 활동
	IP	남극세종과학기지 환경영향평가(1988-99)
	IP	한국 대표 개회사
25	IP	남극과의 비교연구를 위한 북극 니알슨의 새로운 시설
26	IP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에 따른 연차보고서
	IP	스발바르 니알슨에 위치한 다산과학기지 첫 번째 활동
	IP	과학 등 관련분야 관계자들과의 협력 (2002-3)
27	IP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에 따른 연차보고서
	IP	킹조지섬에서의 해상사고
	IP	2003년도 한국의 북극 활동
28	IP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에 따른 연차보고서
	IP	과학 등 관련분야 관계자들과의 협력 (2004-5)
29	WP	“Fides 반도 및 아델리섬의 환경 관리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연락 그룹 설정 제안
	IP	과학 등 관련분야 관계자들과의 협력 (2005-6)
	IP	남극 과학, 미적가치,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공 홍보 촉진
	IP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에 따른 연차보고서
30	IP	과학 등 관련분야 관계자들과의 협력 (2006-7)
	IP	한국의 첫 번째 쇄빙선
	IP	한국의 공공홍보 프로그램: ‘Pole-to-Pole Korea’
31	IP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 제17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WP	남극특별보호구역: 나레브스키 포인트
	IP	과학 등 관련분야 관계자들과의 협력 (2007-8)
31	IP	한국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IP	‘Pole-to-Pole Korea’
32	IP	과학 분야 협력 (2008-9)
	IP	남극세종과학기지 환경관리 개선
	IP	‘Pole-to-Pole Korea’(2008-9)



회차	제출문서	주요 내용
33	IP	테라노바베이 로스해에 새로운 월동기지 건설을 통한 남극과학에 대한 한국의 기여
	IP	과학 분야 협력 (2009-10)
	IP	제1차 아라온 남극 항해
	IP	주요 한국 원조 활동 (2009-10)
	IP	남극특별보호구역 171, 나레브스키 포인트 관리
34	WP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평가
	IP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평가
	IP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및 운영관련 CEE 보고
	IP	과학 분야 협력 (2010-11)
	IP	제1차 아라온 남극항해 (2010/2011)
	IP	ASPA No 150에서의 공동 관리 활동
	IP	ASPA No 171, No 150, No 132에서의 생물 조사
35	IP	CEE 제안에 따른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최종환경영향평가
	IP	ASPA No 171, No 150 관리 보고(2011-12)
	BP	제2차 아라온 남극항해
	BP	과학 분야 협력(2011-12)
	IP	2012-13 남극장보고 기지 건설 진행
36	IP	2012-13 ASPA No 171 관리 보고
	IP	킹조지섬 환경모니터링 관련 한-독일 워크샵
36	BP	제3차 아라온 남극항해
	BP	과학 분야 협력(2012-13)
37	WP	ASPA No 171 개정 관리계획
	IP	제2 남극월동기지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및 시범운영
	BP	최근 5개년 ASPA No 171 관리 및 모니터링 보고(2009-2014)
	BP	과학 분야 협력(2013-14)

위의 표를 살펴보면, 2014년 제37차 회의까지 53개의 IP, 6개의 BP, 5개의 WP를 제출하는 등 총 66개의 의제 문서를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우리나라 제출 의제 현황(제14차~37차)



주요 내용은 남극세종과학기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장보고과학기지 등 우리나라의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남극세종과학기지 부근에 설치된 남극특별보호구역 나레브스키 포인트(ASPA No 171) 관리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제34차 회의 부터 우리나라의 제2의 남극월동기지인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지속적인 IP·WP의 제출을 통해 타 당사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었고, 제37차 회의에서는 2014년 2월 남극장보고과학기지의 건설 완료 및 시범운영에 대한 IP<sup>37)</sup>를 제출하여 남극 공동 과학연구 수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37) 제37차 회의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Information Paper는 부록 4 참조

## 2. 우리나라의 활동 방향<sup>38)</sup>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ATCM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은 각 국의 남극활동을 규정하고 제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남극 기지운영과 쇄빙연구선을 이용한 남극지역 내 항해 등 활발한 남극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 최근의 논의 동향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교환시스템과 관련하여 ATCM를 비롯하여 남극 과학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이 시스템을 통해 유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남극세종과학기지와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운영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지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의 관리, 2009년 제30차 회의에서 지정된 세종기지 인근의 남극특별보호구역인 나레브스키 포인트(Narebski Point)의 관리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남극환경보호 활동에 대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남극수역에서 잇따른 선박사고에 유념하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 국제해사기구 등과 면밀한 자료의 공유를 하는 등 우리의 남극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회의 참석을 통하여 논의 동향을 획득·분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남극 연구 활동을 의제문서로 꾸준히 ATCM에 제출하여 남극조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

38) 2009년~2014년까지 각 회의를 참가한 극지연구소 전문가의 출장보고서를 참조하였다.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 부록

**KOPRI**  
극지연구소



## 부록 1. ATCM 절차규칙 (영한대역)

### Revised Rules of Procedure (2011)

1. Meetings held pursuant to Article IX of the Antarctic Treaty shall be known as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s. Contracting Parties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ose Meetings shall be referred to as "Consultative Parties"; other Contracting Parties which may have been invited to attend those Meetings shall be referred to as "non-Consultative Parties".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Secretariat of the Antarctic Treaty shall be referred to as the "Executive Secretary".



2.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the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and the Council of Managers of National Antarctic Programs, invited to attend those Meetings in accordance with Rule 31, shall be referred to as "Observers".

## 개정된 절차규칙 (2011)

1. 남극조약 제9조에 의하여 개최되는 회의는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로 칭한다. 이 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체약당사국들은 “협약당사국”으로 칭한다. 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된 기타 체약당사국들은 “비협약당사국”으로 칭한다. 남극조약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으로 칭한다.



2. 규칙 제31조에 따라 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된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 협약(CCAMLR),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및 남극 국가남극프로그램 운영자위원회(COMNAP)의 대표들은 “옵저버”라 칭한다.

## Representation

3. Each Consultative Party shall be represented by a delegation composed of a Representative and such Alternate Representatives, Advisers and other persons as each State may deem necessary.

Each non-Consultative Party which has been invited to attend a Consultative Meeting shall be represented by a delegation composed of a Representative and such other persons as it may deem necessary within such numerical limit as may from time to time be determined by the Host Govern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Consultative Parties.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the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and the Council of Managers of National Antarctic Programs shall be represented by their respective Chairman or President, or other persons appointed to this end. The names of members of delegations and of the observers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Host Government prior to the opening of the Meeting.

4. The order of precedence of the delegation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alphabet in the language of the Host Government, all delegations of non-Consultative Parties following after those of Consultative Parties, and all delegations of observers following after non-Consultative Parties.



## 대표

3. 각 협의당사국의 대표와 대리대표, 자문단, 기타 각 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자로 구성된 대표단으로 대표된다.

협의당사국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대된 각 비협의당사국은 대표 및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타의 자로 구성된 대표단으로 대표되며, 그 수적제한은 협의당사국들의 협의를 통하여 개최국에 의해 결정된다.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남극연구과학위원회 및 국가남극프로그램운영자 위원회는 각각 그들의 의장이나 회장, 또는 이를 위하여 지명된 기타의 자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협의당사국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표단 및 옵저버 구성원의 서명이 개최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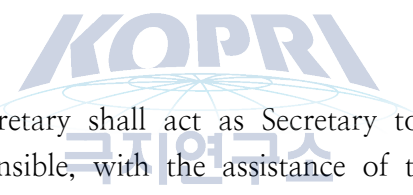


4. 개최국 언어의 알파벳 순서에 의하여 대표단 표기하되, 협의당사국 다음에 비협의당사국의 모든 대표단을 기재하고, 그에 이어 모든 옵저버 대표단을 기재한다.

## Officers

5. A Representative of the Host Government shall be the Temporary Chairman of the Meeting and shall preside until the Meeting elects a Chairman.
6. At its inaugural session, a Chairman from one of the Consultative Parties shall be elected. The other Representatives of Consultative Parties shall serve as Vice-Chairmen of the Meeting in order of precedence. The Chairman normally shall preside at all plenary sessions. If he is absent from any session or part thereof, the Vice-Chairmen, rotating on the basis of the order of precedence as established by Rule 4, shall preside during each such session.

## Secretariat

- 
7.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act as Secretary to the Meeting. He or she shall be responsible, with the assistance of the Host Government, for providing secretariat services for the meeting, as provided in Article 2 of Measure 1 (2003), as provisionally applied by Decision 2 (2003) until Measure 1 becomes effective.


## Sessions

8. The opening plenary session shall be held in public, other sessions shall be held in private, unless the Meeting shall determine otherwise.

## 주재자

5. 개최국의 대표는 해당 협의당사국 회의의 임시 의장이 되며 회의에서 의장 선출 전까지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6. 의장은 본회의 중에 협의당사국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선출되지 아니한 협의당사국의 대표들은 순차적으로 부의장이 된다. 의장은 본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의장의 부재 시에는 규칙 제4조의 순번에 따라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 사무국

- 
7. 사무국장은 협의당사국회의의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국 서비스는 2003년 조치 1의 제 2조, 동년 조치 1의 발효 이전 임시 적용 규정인 결정 2에 따라 개최국의 지원과 사무국장의 책임 하에 제공된다.

## 회의

8. 본회의는 공개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협의당사국회의의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기타 회의들은 비공개로 개최되어야 한다.

##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9. The Meeting, to facilitate its work, may establish such committees as it may deem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defining their terms of reference.
10. The committees shall operate under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Meeting, except where they are inapplicable.
11. Working Groups may be established by the Meeting, or its committees to deal with various agenda items. The Chair(s) of the Working Group(s) will be appointed at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or committee meeting. The Chair(s) will serve no more than four consecutive Meetings or committee meetings, unless otherwise decided. At the conclusion of each Meeting, the Meeting may decide as a preliminary matter which Working Group(s) are proposed for the subsequent Meeting.

## Conduct of Business

12. A quorum shall be constituted by two-thirds of the Representatives of Consultative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13. The Chairman shall exercise the powers of his office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practice. He shall see to the observance of the Rules of Procedure and the maintenance of proper order. The Chairman, in the exercise of his functions, remains under the authority of the Meeting.

## 위원회 및 워킹그룹

9. 협의당사국회의는 작업의 촉진을 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위원회들을 설립할 수 있다.
10. 위원회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당사국회의의 절차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1. 협의당사국회의 또는 위원회는 다양한 의제 논의를 위하여 워킹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 워킹그룹의 의장은 협의당사국회의 또는 위원회의 시작과 함께 지명된다.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은 연속하여 4개 이상의 회의 또는 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다. 각 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다음 회의를 위한 워킹그룹 제안을 예비사항으로서 결정할 수 있다.



## 회의 진행

12. 정족수는 회의에 참석한 협의당사국 대표의 3분의 2로 성립된다.
13. 의장은 관행에 따라 그 지위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절차규칙의 준수 및 질서 유지를 의무가 있다. 의장은 직무 수행함에 있어 협의당사국회의의 권한 아래에 있다.

14. Subject to Rule 28, no Representative may address the Meeting without having previously obtained the permission of the Chairman and the Chairman shall call upon speakers in the order in which they signify their desire to speak. The Chairman may call a speaker to order if his remarks are not relevant to the subject under discussion.
15. During the discussion of any matter, a Representative of a Consultative Party may rise to a point of order and the point of order shall be decided immediately by the Chairma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A Representative of a Consultative Party may appeal against the ruling of the Chairman. The appeal shall be put to a vote immediately, and the Chairman's ruling shall stand unless over-ruled by a majority of the Representatives of Consultative Parties present and voting. A Representative of a Consultative party rising to a point of order shall not speak on the substance of the matter under discussion.
16. The Meeting may limit the time to be allotted to each speaker, and the number of times he may speak on any subject. When the debate is thus limited and a Representative has spoken his allotted time, the Chairman shall call him to order without delay.
17. During the discussion of any matter, a Representative of a Consultative Party may move the adjournment of the debate on the item under discussion. In addition to the proposer of the motion, Representatives of two Consultative Parties may speak in favour of, and two against, the motion, after which the motion shall be put to the vote immediately. The Chairman may limit the time to be allowed to speakers under this Rule.

14. 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대표는 의장의 사전 허가 없이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연설할 수 없으며, 의장은 발언의사를 표시하는 순서에 따라 연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사가 논의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회의 질서를 지키도록 주의 줄 수 있다.

15. 어떤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협의당사국의 대표는 의사진행 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장은 절차규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협의당사국의 대표는 의장의 결정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항의는 즉각적으로 표결에 붙여져야 하고, 의장의 결정은 회의 및 투표에 참여한 협의당사국 대표의 과반수에 의하여 기각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의사진행 상의 문제를 제기한 협의당사국의 대표는 심의 중인 동일 사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16. 각 연사들의 발언 시간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약에 따라 발언을 하는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정속을 명해야 한다.

17. 협의당사국의 대표는 토론 도중이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토론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동 사안의 제안자 및 협의당사국 대표 2인의 찬성과 2인의 반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표결에 붙여져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의장은 연사들의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8. A Representative of a Consultative Party may at any time move the closure of the debate in the item under discussion, whether or not any other Representative has signified his wish to speak. Permission to speak on the closure of the debate shall be accorded only to Representatives of two Consultative Parties opposing the closure, after which the motion shall be put to the vote immediately. If the Meeting is in favour of the closure, the Chairman shall declare the closure of the debate. The Chairman may limit the time to be allowed to speakers under this Rule. (This Rule shall not apply to debate in committees.)
19. During the discussion of any matter, a Representative of a Consultative Party may move the suspension or adjournment of the Meeting. Such motions shall not be debated, but shall be put to the vote immediately. The Chairman may limit the time to be allowed to the speaker moving the suspension or adjournment of the Meeting.
20. Subject to Rule 15, the following motions shall have precedence in the following order over all other proposals or motions before the Meeting:
- a) to suspend the Meeting;
  - b) to adjourn the Meeting;
  - c) to adjourn the debate on the item under discussion;
  - d) for the closure of the debate on the item under discussion.
21. Decisions of the Meeting on all matters of procedure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the Representatives of Consultative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each of whom shall have one vote.



18. 협의당사국 대표는 타 대표의 발언 의사 표현 여부에 관계없이 토의중인 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회의 종료를 제안할 수 있다. 회의 종료에 대한 허가는 종료를 반대하는 2인의 협의당사국 대표에게만 부여되고, 즉각적으로 표결에 붙여져야 한다. 협의당사국 회의의 종료가 찬성된 경우, 의장은 토론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연사들에게 배당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이 규칙은 위원회에서의 토론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9. 협의당사국대표는 토론 중이더라도 회의의 연기 또는 중단을 제안할 수 있다. 해당 요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표결에 붙여져야 한다. 의장은 회의의 연기 또는 중단을 제안하는 연사에게 배당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0. 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발의는 회의의 모든 제안 또는 발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a) 회의의 연기;
- b) 회의의 중지;
- c) 토의 중인 사항에 대한 토론의 중지
- d) 토의 중인 사항에 대한 토론의 종료.

21. 절차적 사안에 관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투표권을 가진 협의당사국 대표들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 되어야 한다.

## Languages

22.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shall b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Meeting.
23. Any Representative may speak in a language other than the official languages. However, in such cases he shall provide for interpretation into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 Measures, Decisions, and Resolutions and Final Report

24. Without prejudice to Rule 21, Measures, Decisions and Resolutions, as referred to in Decision 1 (1995), shall be adopted by the Representatives of all Consultative Parties present and will thereafter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Decision 1 (1995).
25. The final report shall also contain a brief account of the proceedings of the Meeting. It will be approved by a majority of the Representatives of Consultative Parties present and shall be transmitted by the Executive Secretary to Governments of all Consultative and non-Consultative Parties which have been invited to take part in the Meeting for their consideration.
26. Notwithstanding Rule 25, the Executive Secretary, immediately following the closure of the Consultative Meeting, shall notify all Consultative Parties of all Measures, Decisions and Resolutions taken and send them authenticated copies of the definitive texts in an appropriate language of the Meeting. In respect to a Measure adopted under the procedures of Article 6 or 8 of Annex V of the Protocol, the respective notification shall also include the time period for approval of that Measure.

## 언어

22. 협의당사국회의의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이다.
23. 모든 대표들은 공식 언어가 아닌 언어로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공식 언어를 통역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조치, 결정, 결의안, 최종보고서

24. 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조치·결정·결의안(Resolution 1 (1995))은 참석한 모든 협의당사국의 대표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25. 최종보고서는 회의결과와 부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협의당사국 대표의 과반수에 의해 채택되고, 사무국장은 그 검토를 위해 모든 협의당사국 및 비협의당사국 정부로 발송되어야 한다.
26. 규칙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협의당사국 회의의 종료 후 즉각적으로 모든 협의당사국에게 채택된 모든 조치·결정·결의안을 공지하고, 공식 언어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의정서 제5부속서의 제6조 또는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채택된 조치는 각 조치의 승인을 위한 그 시한을 포함하여야 한다.

## Non-Consultative Parties

27. Representatives of non-Consultative Parties, if invited to attend a Consultative Meeting, may be present at:
- a) all plenary sessions of the Meeting; and
  - b) all formal Committees or Working Groups, comprising all Consultative Parties, unless a Representative of a Consultative Party requests otherwise in any particular case.
28. The relevant Chairman may invite a Representative of a non-Consultative Party to address the Meeting, Committee or Working group which he is attending, unless a Representative of a Consultative Party requests otherwise. The Chairman shall at any time give priority to Representatives of Consultative Parties who signify their desire to speak and may, in inviting Representatives of non-Consultative Parties to address the Meeting, limit the time to be allotted to each speaker and the number of times he may speak on any subject.
29. Non-Consultative Parties are not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taking of decisions.
- 30.
- a) Non-Consultative Parties may submit documents to the Secretariat for distribution to the Meeting as information documents. Such documents shall be relevant to matters under Committee consideration at the Meeting.
  - b) Unless a Representative of a Consultative Party requests otherwise such documents shall be available only in the language or languages in which they were submitted.

## 비협의당사국

27. 협의당사국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비협의당사국의 대표는 다음에 출석할 수 있다:
- a) 협의당사국 회의의 모든 본회의; 및
  - b) 협의당사국의 대표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협의당사국이 구성하는 모든 공식 위원회 또는 워킹그룹.

28. 협의당사국의 대표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의장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회의 및 위원회 또는 워킹그룹에 비협의당사국의 대표를 연사로 초청할 수 있다. 의장은 언제든지 발언 의사를 표시한 협의당사국의 대표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비협의당사국의 대표를 회의에 초대함에 있어 각 연사에게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29. 비협의당사국은 결정 채택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


30.

- a) 비협의당사국은 회의에 배포될 정보문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문서는 회의 및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과 관련 있어야 한다.
- b) 협의당사국의 대표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문서는 공식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Antarctic Treaty System Observers

31. The observers referred to in Rule 2 shall attend the Meetings for the specific purpose of reporting on:
  - a) in the case of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developments in its area of competence.
  - b) in the case of the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 i) the general proceedings of SCAR;
    - ii) matters within the competence of SCAR under the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 iii) such publications and reports as may have been published or prepared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s IX-19 and VI-9 respectively.
  - c) in the case of the Council of Managers of National Antarctic Programs, the activities within its area of competence.
32. Observers may be present at:
  - a) the plenary sessions of the Meeting at which the respective Report is considered;
  - b) formal committees or working groups, comprising all Contracting Parties at which the respective Report is considered, unless a Representative of a Consultative Party requests otherwise in any particular case.
33. Following the presentation of the pertinent Report, the relevant Chairman may invite the observer to address the Meeting at which it is being considered once again, unless a Representative of a Consultative Party requests otherwise. The Chairman may allot a time limit for such interventions.

## 남극조약체제 옵저버

31. 규칙 제2조에 언급된 옵저버는 다음을 보고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a)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의 경우, 권한 범위의 발전에 관한 사항
  - b)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경우:
    - i)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일반적인 절차;
    - ii) 남극물개보존에 관한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권한 내의 사안
    - iii) 이와 관련한 문서 및 보고서는 각각 권고 9-19 및 6-9에 따라 준비 또는 발행될 수 있다.
  - c) 남극 국가운영자 위원회의 경우, 권한 범위 내에서의 활동에 관한 사항
- 
32. 옵저버는 다음에 참석할 수 있다:
- a) 각각의 보고서가 다루어지는 협의당사국 회의의 본회의;
  - b) 협의당사국의 대표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모든 체약국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위원회들 또는 워킹그룹.
33. 협의당사국 대표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의장은 관련 보고서의 발표에 이어 다시 한 번 다루어지고 있는 회의에 옵저버를 연사로 초대할 수 있다. 의장은 이러한 조정을 위하여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34. Observers are not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taking of decisions.
35. Observers may submit their Report and/or documents relevant to matters contained therein to the Secretariat, for distribution to the Meeting as working papers.

#### Agenda for Consultative Meetings

36. At the end of each Consultative Meeting, the Host Government of that Meeting shall prepare a preliminary agenda for the next Consultative Meeting. If approved by the Meeting, the preliminary agenda for the next Meeting shall be annexed to the Final Report of the Meeting.
37. Any Contracting Party may propose supplementary items for the preliminary agenda by informing the Host Government for the forthcoming Consultative Meeting no later than 180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each proposal shall be accompanied by an explanatory memorandum. The Host Government shall draw the attention of all Contracting Parties to this Rule no later than 210 days before the Meeting.
38. The Host Government shall prepare a provisional agenda for the Consultative Meeting. The provisional agenda shall contain:
  - a) all items on the preliminary agenda decided in accordance with Rule 36; and
  - b) all items the inclusion of which has been requested by a Contracting Party pursuant to Rule 37.Not later than 120 days before the Meeting, the Host Government shall transmit to all the Contracting Parties the provisional agenda, together with explanatory memoranda and any other papers related thereto.



34. 옵저버는 결정 채택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
35. 옵저버는 관련된 사안이 포함된 보고서 또는 문서가 작업문서로 회의에 배포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협약당사국 회의의 의제

36. 각 협약당사국회의 마지막에 그 회의의 개최국은 다음의 협약당사국 회의를 위한 예비 의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협약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경우, 다음 회의를 위한 예비 의제는 회의의 최종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37. 모든 체약국은 회의 개최 180일 전에 다가오는 협약당사국 회의의 개최국에 통지함으로써 예비 의제를 위한 추가적인 사항들을 제안할 수 있다; 각 제안에는 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최국은 회의 시작 210일 전까지 이 규칙을 모든 체약국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38. 개최국은 협약당사국 회의를 위한 임시 의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임시 의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규칙 제36조에 따라 결정된 예비 의제에 대한 모든 사항들; 및
  - b) 규칙 제37조에 따라 체약국에 의해 요청된 것을 포함하는 모든 사항들.개최국은 회의 시작 120일 전까지 임시 의제와 이를 설명하는 자료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기타 문서들을 모든 체약국에 발송하여야 한다.

## Experts from International Organisations

39. At the end of each Consultative Meeting, the Meeting shall decide which international organisations having a scientific or technical interest in Antarctica shall be invited to designate an expert to attend the forthcoming Meeting in order to assist it in its substantive work.
40. Any Contracting Party may thereafter propose that an invitation be extended to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having a scientific or technical interest in Antarctica to assist the Meeting in its substantive work; each such proposal shall be submitted to the Host Government for that Meeting not later than 180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and shall be accompanied by a memorandum setting out the basis for the proposal.
41. The Host Government shall transmit these proposals to all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in Rule 38. Any Consultative Party which wishes to object to a proposal shall do so not less than 90 days before the Meeting.
42. Unless such an objection has been received, the Host Government shall extend invitations to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dentified in accordance with Rules 39 and 40 and shall request each international organisation to communicate the name of the designated expert to the Host Government prior to the opening of the Meeting. All such experts may attend the Meeting during consideration of all items, except for those item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Antarctic Treaty System which are identified by the previous Meeting or upon adoption of the agenda.

## 국제기구의 전문가

39. 각 협의당사국회의의 마지막에, 실질적인 작업을 돕기 위해 다음 회의에 참석할 전문가를 지명하기 위하여, 남극에 대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 중 어떤 기구가 초대 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40. 그 후에 어떤 체약국이라도 회의의 실질적인 작업을 돕기 위해 남극에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국제 조직에까지 초대가 확대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각각의 제안은 회의가 시작되기 180일 전까지 회의의 개최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러한 제안의 근거를 설명하는 메모가 첨부되어야 한다.



41. 규칙 제38조의 절차에 따라 개최국은 그러한 제안들을 모든 체약국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제안에 반대하고자 하는 협의당사국은 회의 시작 90일 이전에 그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여야 한다.

42. 그러한 반대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개최국은 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확인된 국제기구에 초대를 확대하여야 하며,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명된 전문가의 성명을 개최국에 전달할 것을 각각의 국제기구에 요청하여야 한다. 모든 지명된 전문가들은 이전의 회의 또는 의제의 채택을 통하여 확인된 남극조약체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43. The relevant Chairman, with the agreement of all the Consultative Parties, may invite an expert to address the meeting he is attending. The Chairman shall at any time give priority to Representatives of Consultative Parties or non-Consultative Parties or Observers referred to in Rule 31 who signify their desire to speak, and may in inviting an expert to address the Meeting limit the time to be allotted to him and the number of times he may speak on any subject.
44. Experts are not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taking of decisions.
- 45.
- a) Experts may, in respect of the relevant agenda item, submit documents to the Secretariat for distribution to the Meeting as information documents.
  - b) Unless a Representative of a Consultative Party requests otherwise, such documents shall be available only in the language or languages in which they were submitted.

43. 관련 의장은 모든 협의당사국들의 동의하에 전문가를 참석하고 있는 회의에 연사로 초대할 수 있다. 의장은 발언 의사를 표시하는 규칙 제31조에 언급된 협의당사국이 및 비협의당사국 대표 또는 옵저버에게 언제든지 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전문가를 회의에 연사로 초대함에 있어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44. 전문가는 결정을 채택하는 데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

45.

- a) 관련 의제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는 회의에 정보문서로 배포될 수 있도록 문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 b) 협의당사국의 대표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이 문서들은 공식 언어로만 작성되어야 한다.



## Intersessional Consultations

46. Intersessionally,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within his/her competence as established under Measure 1 (2003) and associated instruments that govern the operation of the Secretariat, consult the Consultative Parties, when legally required to do so under relevant instruments of the ATCM and when the exigencies of the circumstances require action to be taken before the opening of the next ATCM, using the following procedure:
- a)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transmit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any proposed action to all Consultative Parties through contact persons designated by them, indicating an appropriate date by which responses are requested;
  - b)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ensure that all Consultative Parties acknowledge the receipt of such transmission, and shall also ensure the list of contact persons is current;
  - c) Each Consultative Party shall consider the matter and communicate their reply, if any, to the Executive Secretary through their respective contact person by the specified date;
  - d) The Executive Secretary after informing the Consultative Parties of the result of the consultations, may proceed to take the proposed action if no Consultative Party has objected; and
  - e)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keep a record of the intersessional consultations, including their results and the actions taken by him/her and shall reflect these results and actions in his/her report to the ATCM for its review.

## 세션간 협의

46. 당사국회의의 관련 문서들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 법적으로 요청되고 상황이 긴급하여 다음 당사국회의 개최 전에 행동이 취해져야 하는 경우, 2003년 조치 1 및 관련 문서들에 따라 확립된 사무국의 운영을 지배하는 그의 권한 내에서 사무국장은 회의와 다음 회의 간에 아래 절차에 따라 협의당사국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

- a) 사무국장은 지명된 연락담당자를 통하여 관련 정보 및 모든 제안된 행동들을 모든 협의당사국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회신이 요청되는 적절한 날짜를 명시하여야 한다;
- b) 사무국장은 모든 협의당사국이 그러한 발송의 수령을 인정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연락담당자의 목록이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 c) 각각의 협의당사국은 사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만일 필요한 경우 그들의 연락담당자를 통하여 명기된 날짜에 사무국장에게 그들의 회신을 전하여야 한다;
- d) 협의의 결과를 협의당사국에게 통지한 후에, 만일 반대하는 협의당사국이 없다면 사무국장은 제안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또한
- e) 사무국장은 그들의 결과 및 취해진 행동들을 포함하여, 세션 간 협의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그러한 결과와 행동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ATCM에 제출하는 그의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7. Intersessionally, when a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the activities of the ATCM is received from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having a scientific or technical interest in Antarctica,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coordinate a response, using the following procedure:

- a)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transmit the request and a first draft response to all Consultative Parties through contact persons designated by them, proposing to answer the request, and including an appropriate date by which Consultative Parties should either (1) indicate tha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answer, or (2) provide comments to the first draft response.

The date shall give a reasonable amount of time to provide comments, taking into account any deadlines set by the initial requests for information.

If a Consultative Party indicates that a response would not be appropriate,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send only a formal response, acknowledging the request without going into the substance of the matter.

- b) If there is no objection to proceeding and if comments are provided before the date specified in the transmis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a) above,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revise the response in light of the comments and transmit the revised response to all Consultative Parties, including an appropriate date by which reactions are requested;
- c) If any further comments are provided before the date specified in the transmis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b) above,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repeat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paragraph (b) above until no further comments are provided;



47. 남극에 대해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조직으로부터 세션 간의 ATCM의 행동에 대한 정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장은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회신을 조정하여야 한다:

- a) 사무국장은 지명된 연락담당자를 통하여 그러한 요청 및 회신의 초안을 모든 협의당사국들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안하고 협의당사국들이 (1)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거나 (2) 초안에 대한 코멘트를 제공하여야 할 적절한 날짜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 날짜는 정보에 대한 최초의 요청에 의해 정해진 시한을 고려하여 코멘트를 제공하기에 합리적인 기간을 가져야 한다.

만일 어떤 협의당사국이 사무국장의 회신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본질과 상관 없이 그러한 요청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회신을 보내야 한다.

- b) 만일 진행에 대한 반대가 없고 위 (a)에 언급된 발송이 명기된 날짜 전에 제공된 코멘트가 없는 경우, 사무국장은 코멘트를 고려하여 회신을 수정하여야 하며 답변이 요청되는 적절한 날짜를 포함하여 수정된 회신을 모든 협의당사국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c) 위 (b)에 언급된 발송에 명기된 날짜 전에 추가적인 코멘트가 제공된 경우, 사무국장은 더 이상의 코멘트가 제공되지 않을 때까지 위 (b)에 언급된 절차를 반복하여야 한다;

- d) If no comments are provided before the date specified in a transmis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a), (b) or (c) above,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circulate a final version and shall request both an active digital “read”-confirmation and an active digital “accept”-confirmation from each Consultative Party, suggesting a date by which the “accept”-confirmation should be received.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keep the Consultative Parties informed about the progress of received confirmations. After receipt of “accept”-confirmations from all Consultative Parties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sign and send the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concerned, on behalf of all Consultative Parties, and shall provide a copy of the signed response to all Consultative Parties.
- e) Any Consultative Party may, at any stage of this process, ask for more time for consideration.
- f) Any Consultative Party may, at any stage of this process, indicate tha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respond to the request. In this case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send only a formal response, acknowledging the request without going into the substance of the matter.

## Meeting Documents

48. Working Papers shall refer to papers submitted by Consultative Parties that require discussion and action at a Meeting and papers submitted by Observers referred to in Rule 2.
49. Secretariat Papers shall refer to paper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pursuant to a mandate established at a Meeting, or which would, in the view of the Executive Secretary, help inform the Meeting or assist in its operation.

d) 위 (a), (b) 및 (c)에 언급된 발송에 명기된 날짜 전에 더 이상의 코멘트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사무국장은 최종 버전을 배포하여야 하며 각각의 협의당사국으로부터 active digital “읽음”확인과 active digital “승인”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확인을 받아야 하는 날짜를 제안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수령된 확인의 진척에 대한 정보를 협의당사국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협의당사국으로부터 “승인”확인을 받은 후에 사무국장은 모든 협의당사국을 대신하여 회신에 서명하고 이를 관련 국제조직에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서명된 회신의 사본을 모든 협의당사국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 이러한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협의당사국은 고려를 위한 시간을 더 요청할 수 있다.

f) 이러한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협의당사국은 요청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본질과 상관 없이 그러한 요청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회신을 보내야 한다.

## 회의 문서

48. 작업문서는 협의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서 회의에서의 토의와 행동을 요구하는 문서 및 규칙 제2조에 언급된 옵저버에 의해 제출된 문서를 말한다.

49. 사무국 문서는 회의에서 확립된 권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사무국장의 관점에서 회의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운영을 돕기 위해 사무국에 의해 준비된 문서를 말한다.

50. Information Papers shall refer to:

- . Papers submitted by Consultative Parties or Observers that provide information in support of a Working Paper or that are relevant to discussions at a Meeting;
- . Papers submitted by Non-Consultative Parties that are relevant to discussions at a Meeting; and
- . Papers submitted by Experts that are relevant to discussions at a Meeting.

51. Background Papers shall refer to papers submitted by any participant that will not be introduced in a Meeting, but that are submitted for the purpose of formally providing information.

52. Procedures for the submission, translation and distribution of documents are annexed to these Rules of Procedure.

## Amendments

53. These Rules of Procedure may be amend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Representatives of Consultative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This Rule shall not apply to Rules 24, 27, 29, 34, 39-42, 44, and 46, amendments of which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e Representatives of all Consultative Parties present at the Meeting.

50. 정보문서는 다음을 말한다:

- . 협의당사국 또는 옵저버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서 작업문서를 지지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회의에서의 토의와 관련된 문서;
- . 비협의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서 회의에서의 토의와 관련된 문서; 및
- . 회의에서의 토의와 관련하여 전문가에 의해 제출된 문서.

51. 배경문서는 모든 참가자들에 의해 제출된 문서를 참고하여야 하며 회의에서는 소개되지 않는다.

52. 문서들의 제출, 번역 및 배포를 위한 절차는 이 절차규칙에 첨부되어 있다.



개정

53. 이 절차규칙은 회의에 참여한 협의당사국 대표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이 규칙은 제24조, 27조, 29조, 34조, 39-42조, 44조 및 46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개정들은 회의에 참석한 협의당사국 대표들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Annex

### Procedures for the Submission, Translation and Distribution of Documents for the ATCM and the CEP

1. These procedures apply to the distribution and translation of official papers for the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ATCM) and for the Committe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CEP) as defined in their respective Rules of Procedure. These papers consist of Working Papers, Secretariat Papers, Information Papers and Background Papers.
2. Documents to be translated are Working Papers, Secretariat Papers, reports submitted to the ATCM by ATCM Observers and invited Expert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Recommendation XIII-2, reports submitted to the ATCM in relation to Article III-2 of the Antarctic Treaty, and Information Papers that a Consultative Party requests be translated. Background Papers will not be translated.
3. Papers that are to be translated, with the exception of the reports of Intersessional Contact Groups (ICG) convened by the ATCM or CEP, Chair Reports from Antarctic Treaty Meetings of Experts, and the Secretariat's Report and Programme, should not exceed 1500 words. When calculating the length of a paper, proposed Measures, Decisions and Resolutions and their attachments are not included.
4. Papers that are to be translated should be received by the Secretariat no later than 45 days before the Consultative Meeting. If any such paper is submitted later than 45 days before the Consultative Meeting, it may only be considered if no Consultative Party objects.

## 부속서

### ATCM 및 CEP를 위한 문서의 제출, 번역 및 배포를 위한 절차

1. 이러한 절차들은 각각의 절차규칙에 정의된 바와 같이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ATCM) 및 환경보호위원회(CEP)의 공식적인 문서들의 배포 및 번역에 적용된다. 이러한 문서들은 작업문서, 사무국 문서, 정보문서 및 배경문서들을 구성한다.
2. 번역되어야 할 문서들은 작업문서, 사무국 문서, ATCM 옵저버들 및 권고 13-2의 조항에 따라 초대된 전문가들에 의해 ATCM에 제출된 보고서, 남극조약 제3조 2항과 관련하여 ATCM에 제출된 보고서 및 협의당사국이 번역을 요청하는 정보문서들이다. 배경문서는 번역되지 않는다.
3. ATCM이나 CEP에 의해 소집된 세션간 연락 그룹(ICG)의 보고서, 남극조약 전문가회의의 의장 보고서 및 사무국의 보고서와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 번역되어야 하는 문서들은 1500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문서의 길이를 계산할 때 제안된 조치, 결정 및 권고와 그 부록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4. 번역되어야 할 문서들은 협의당사국 회의가 시작되기 45일 전까지 사무국에 수령되어야 한다. 만일 협의당사국 회의가 시작되기 45일 전보다 늦게 그러한 문서들이 제출된 경우, 그 문서는 협의당사국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만 다루어진다.

5. The Secretariat should receive Information Papers for which no translation has been requested and Background Papers that participants wish to be listed in the Final Report no later than 30 days before the Meeting.
6. The Secretariat will indicate on each document submitted by a Contracting Party, an Observer, or an Expert the date it was submitted.
7. When a revised version of a Paper made after its initial submission is resubmitted to the Secretariat for translation, the revised text should indicate clearly the amendments that have been incorporated.
8. The Papers should be transmitted to the Secretariat by electronic means and will be uploaded to the ATCM Home Page established by the Secretariat. Working Papers received before the 45 day limit should be uploaded as soon as possible and in any case not later than 30 days before the Meeting. Papers will be uploaded initially to the password protected portion of the website, and moved to the non-password protected part once the Meeting has concluded.
9. Parties may agree to present any paper for which a translation has not been requested to the Secretariat during the Meeting for translation.
10. No paper submitted to the ATCM sh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discussion at the ATCM or at the CEP unless it has been translated into the four official languages.
11. Within six months of the end of the Consultative Meeting the Secretariat will circul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also post on the ATCM Home Page the Final Report of that Meeting in the four official languages.



5. 사무국은 번역이 요청되지 않은 정보문서와 참석자들이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배경문서들을 회의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수령하여야 한다.
6. 사무국은 체약국, 옵저버 또는 전문가에 의해 제출된 각각의 문서들에 제출된 날짜를 표시할 것이다.
7. 처음 제출된 후에 만들어진 개정된 버전의 문서가 번역을 위하여 사무국에 다시 제출된 경우, 그 번역본은 포함된 개정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8. 문서들은 전자수단을 통하여 사무국에 발송되어야 하며 사무국에 의해 설립된 ATCM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것이다. 45일의 기한 전에 수령된 작업문서는 회의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반드시 최대한 빨리 업로드 되어야 한다. 문서들은 먼저 웹사이트에서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장소에 업로드 될 것이며, 회의가 종료되면 비밀번호로 보호되지 않는 장소로 옮겨질 것이다.
9. 체약국들은 회의기간 동안 번역이 요청되지 않은 문서를 번역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제출하는 데에 동의할 수 있다.
10. 4개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한 ATCM에 제출된 문서는 ATCM이나 CEP에서 토의의 근거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1. 협의당사국 회의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회의의 최종보고서를 배포할 것이며 이를 4개 공식 언어로 ATCM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다.

## 부록 2. 역대 ATCM 및 한국대표 명단

【표 7】 역대 ATCM 및 한국대표 명단<sup>39)</sup>

회차	날짜	장소	한국 대표
1	1961.07.10. ~ 1961.07.24.	호주, 캔버라	
2	1962.07.18. ~ 1962.07.28.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3	1964.06.02. ~ 1964.06.13.	벨기에, 브뤼셀	
4	1966.11.03. ~ 1966.11.18.	스페인, 산티아고	
5	1968.11.18. ~ 1968.11.29.	프랑스, 파리	
6	1970.10.19. ~ 1970.10.31.	일본, 도쿄	
7	1972.10.30. ~ 1972.11.10.	뉴질랜드, 웰링턴	

39) 극지정책자료 2008-3, 각 회차 회의결과 공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회차	날짜	장소	한국 대표
8	1975.06.09. ~ 1975.06.20.	노르웨이, 오슬로	
9	1977.09.19. ~ 1977.10.07.	영국, 런던	
10	1979.09.17. ~ 1970.10.05.	미국, 워싱턴D.C.	
11	1981.06.23. ~ 1981.07.07.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12	1983.09.13. ~ 1970.09.27.	호주, 캔버라	
13	1985.10.18. ~ 1985.10.18.	벨기에, 브뤼셀	
14	1987.10.06. ~ 1987.10.16.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윤경오(외무부), 천영민(브라질 한국대사관), 이서항(한국해양연구원)
15	1989.10.09. ~ 1989.10.20.	프랑스, 파리	한우석(프랑스 한국대사관), 홍재희(과기부), 최종무(외무부), 박석범(프랑스 한국대사관), 박병권(한국해양연구원), 허형택(한국남극위원회), 이서항(한국해양연구원)
16	1991.10.07. ~ 1991.10.18.	독일, 본	안현일(스위스 한국대사관), 권세영(스위스 한국대사관), 최태현(외무부), 이서항(국가외교안보연구원), 박병권(한국해양연구원)
17	1992.11.11. ~ 1992.11.26.	이탈리아, 베니스	이기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황성현(외무부), 김예동(한국해양연구원)

회차	날짜	장소	한국 대표
18	1994.04.11. ~ 1994.04.22.	일본, 교토	이성곤(외무부), 최성호(외무부), 조성영(외무부), 임한택(외무부), 김해용(외무부), 박철주(외무부), 이서항(국가외교안보연구원), 남광표(일본국대사관), 김동엽(한국해양연구원), 전득산(한국해양연구원)
19	1995.05.08. ~ 1995.05.19.	대한민국, 서울	이기주(외교부), 오운경(외교부), 정화태(외교부), 전영덕(외교부), 최성호(외교부), 송원오(한국해양연구원), 이서항(국가외교안보연구원), 조성용(일본 한국대사관), 하찬호(외교부), 정해용(외교부), 임한택(외교부), 황성연(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 권계현(외교부), 이민철(외교부), 이인규(법무부), 박영군(통산산업부), 정대진(통산산업부), 김정호(환경부), 조복조(환경부), 장상구(과학기술부), 박영선(한국해양항만청), 정복철(수산부), 박병권(한국해양연구원), 허형택(한국해양연구원), 김예동(한국해양연구원), 김수암(한국해양연구원), 최문영(한국해양연구원), 김명기(명지대), 노명준(단국대), 박준희(한길로펌), 이석영(한남대), 정감영(국제법한국연합), 홍순길(한국항공대), 박기갑(한림대), 하원재, 김영준(한국환경기술연구원), 문대연(국립수산연구원)

회차	날짜	장소	한국 대표
20	1996.04.29. ~ 1996.05.10.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진영덕(외무부), 김동만(법무부), 진석균(외교부), 김동엽(한국해양연구원), 이상훈(한국해양연구원),
21	1997.05.19. ~ 1997.05.30.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오윤경(한국대사관), 이서항(국가외교안보연구원), 임한태(한국대사관), 배종인(외교부), 최윤희(법무부), 현기진(해수부), 안인영(한국해양연구원)
22	1998.05.25. ~ 1998.06.05.	노르웨이, 트롬소	김은수(외교부), 최희덕(외교부), 현기진(해수부), 김예동(한국해양연구원), 안인영(한국해양연구원), 박기갑(한림대)
23	1999.05.24. ~ 1999.06.04.	페루, 리마	김옥주(외교부), 최희덕(외교부), 현기진(해수부), 김예동(극지연구소)
24	2001.07.09. ~ 2001.07.20.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정해웅(이태리 한국대사관), 이상훈(한국해양연구원), 안인영(한국해양연구원)
25	2002.09.10. ~ 2002.09.20.	폴란드, 바르샤바	송민순(폴란드 한국대사관), 권태면(폴란드 한국대사관), 조성호(외교부), 정충모(해수부), 강정완(환경부), 김예동(한국해양연구원), 안인영(한국해양연구원), 권문상(한국해양연구원)
26	2003.06.09. ~ 2003.06.20.	스페인, 마드리드	장동희, 최재영(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용희(한국해양연구원), 박재수(해수부), 박대현(환경부), 안인영(한국해양연구원)
27	2004.05.24. ~ 2004.06.04.	남아공, 케이프타운	김은수(외교부), 박재수(해수부), 이상준(환경부), 고영근, 최재영(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예동(극지연구소), 안인영(극지연구소),

회차	날짜	장소	한국 대표
28	2005.06.06. ~ 2005.06.17.	스웨덴, 스톡홀름	박재수(해수부), 이상준(환경부), 안인영(극지연구소), 최재용(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종근, 김홍수, 이원식
29	2006.06.12. ~ 2006.06.23.	영국, 에딘버러	이서향(외교안보연구원), 최예용(충남대), 나길(환경부), 안인영(극지연구소), 남상현(극지연구소), 송중준(극지연구소), 진동민(극지연구소)
30	2007.04.30. ~ 2007.05.11.	인도, 뉴델리	송중준(해수부), 강량(극지연구소), 안인영(극지연구소)
31	2008.06.02. ~ 2008.06.13.	우크라이나, 키예프	박철주(외교부), 김도현(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서영민(외교부), 손병용(환경부), 안인영(극지연구소), 서현교(극지연구소), 최재용(충남대)
32	2009.04.06. ~ 2009.04.17.	미국, 볼티모어	신각수(외교부), 박철주(외교부), 김병수(외교부), 김찬우(환경부), 김명환(환경부), 최재용(충남대), 정광용(외교부), 배성환(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안인영(극지연구소), 서현교(극지연구소), 진동민(극지연구소)
33	2010.05.03. ~ 2010.05.14.	우루과이, 폰다 델 에스테	이기철(외교부), 주현중(국토부), 조지이(외교부), 최재용(충남대), 김지영(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예동(극지연구소), 진동민(극지연구소), 안인영(극지연구소), 서현교(극지연구소)

회차	날짜	장소	한국 대표
34	2011.06.20. ~ 2011.07.0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기철(외교부), 양재국(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조지이(외교부), 임현택(국토부), 최재용(충남대), 이영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황준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김예동(극지연구소), 이유경(극지연구소), 김지희(극지연구소), 서현교(극지연구소)
35	2012.06.11. ~ 2012.06.20.	호주, 호바트	안인영, 김예동, 진동민, 신형철, 이유경, 정호성, 김지희, 서현교 (이상 극지연구소)
36	2013.05.20. ~ 2013.05.29.	벨기에, 브뤼셀	정기용(외교부), 서영민(외교부), 양승조(환경부), 최창용(서울대), 김윤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형철(극지연구소), 김지희(극지연구소), 서현교(극지연구소)
37	2014.04.28. ~ 2014.05.07.	브라질, 브라질리아	이자형(외교부), 서영민(외교부), 정래광(환경부), 손은정(해수부), 안인영(극지연구소), 정호성(극지연구소), 신형철(극지연구소), 김지희(극지연구소)
38	2015.06.01. ~ 2015.06.10.	불가리아, 소피아	미 정

### 부록 3. ATCM에서 개최되는 기타 회의

【표 8】 외교 회의(Diplomatic Conference)<sup>40)</sup>

연 번	날 짜	장 소	주 제
1	1959.10.15. ~ 1959.12.01.	워싱턴	남극 컨퍼런스
2	1972.02.03. ~ 1972.02.11	런던	남극해표 보호활동
3	1980.05.07. ~ 1980.05.20.	캔버라	남극해양생물 자원보존위원회
4	1988.09.12. ~ 1988.09.16.	런던	남극해표 보호활동 리뷰

KOPRI  
극지연구소

40) 남극조약사무국 [www.ats.aq](http://www.ats.aq)



**【표 9】 전문가 회의(Meeting of Experts)<sup>41)</sup>**

연 번	날 짜	장 소	주 제
1	1963.01.24. ~ 1963.01.28.	워싱턴	1차 남극 통신
2	1969.09.01. ~ 1969.09.12.	부에노스 아이레스	2차 남극 통신
3	1978.09.11. ~ 1978.09.15.	워싱턴	3차 남극 통신
4	1989.05.02 ~ 1989.05.05.	파리	항공안전
5	1992.06.01. ~ 1992.06.04.	부에노스 아이레스	환경감시
6	2000.04.17. ~ 2000.04.19.	런던	남극 배송(보급, 선적)
7	2004.03.22. ~ 2004.03.25.	트롬소	관광
8	2009.12.09. ~2009.12.11.	웰링톤	해상운송
9	2010.04.06. ~ 2010.04.09.	스볼베르	기후변화

41) 남극조약사무국 [www.ats.aq](http://www.ats.aq)

**【표 10】 특별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Special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회 차	날 짜	장 소	비 고
1	1997.07.25. ~ 1997.07.29.	런던	
2-1	1978.04.27. ~ 1978.05.10.	캔버라	CCAMLR 조약에 대한 심의 (4회의 비공식 회의)
2-2	1978.06.17. ~ 1978.06.28.	부에노스 아이레스	
2-3	1980.05.05. ~ 1980.05.06.	캔버라	
3	1981.05.03.	부에노스 아이레스	
4-1	1982.06.14. ~ 1982.06.25.	웰링턴	남극광물자원 활동조약 심의
4-2	1983.07.11. ~ 1983.07.22.	본	
4-3	1985.09.23. ~ 1985.10.04.	파리	
4-4	1984.01.18. ~ 1984.01.27.	워싱턴	
4-5	1984.05.23. ~ 1984.05.31.	도쿄	
4-6	1985.02.26. ~ 1985.03.08.	리우 데 자네이로	
4-7	1985.09.23. ~ 1985.10.04.	파리	
4-8	1986.04.14. ~ 1986.04.25.	호바트	
4-9	1986.10.27. ~ 1986.11.12.	도쿄	
4-10	1987.05.11. ~ 1987.05.20.	몬테비데오	
4-11	1988.01.18. ~ 1988.01.29.	웰링턴	

회 차	날 짜	장 소	비 고
4-12	1988.05.02. ~ 1988.06.02.	웰링턴	
5	1983.09.12.	캔버라	
6	1985.10.07.	브뤼셀	
7	1987.10.05.	리우 데 자네이로	
8	1988.09.20. ~ 1988.09.21.	파리	
9	1989.10.09.	파리	
10	1990.11.19.	비나델마	
11-1	1990.11.19. ~ 1990.12.06.	비나델마	
11-2	1991.04.22. ~ 1991.04.30.	마드리드	
11-3	1991.06.17. ~ 1991.06.22.	마드리드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심의
11-4	1991.10.03. ~ 1991.10.04.	마드리드	
12	2000.09.14. ~ 2000.09.18.	헤이그	3차 CEP 보고서 심의

## 부록 4. 역대 ATCM 채택 문서 목록

【표 11】 역대 ATCM 채택 문서 목록<sup>42)</sup>

\* M: Measure, D: Decision, R: Resolution

\* 12회는 Special Meeting 의제

회차-안건	주요 내용
1-1	과학연구사업에 있어 정보 교환
1-2	과학자간 교류
1-3	과학연구 데이터 교류
1-4	SCAR(남극연구과학위원회)
1-5	국제기구
1-6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
1-7	보급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
1-8	동식물군 보존
1-9	유적지
1-10	응급상황시 지원
1-11	통신망
1-12	우편서비스
1-13	방사능장비 및 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1-14	협약당사국회의를 위한 운영 협약
1-15	제 2차 협약당사국 회의
1-16	협약당사국 회의 준비
2-1	과학연구데이터 교류
2-2	남극 동·식물 보존
2-3	통신망
2-4	운영 관련 정보 교류
2-5	보급 관련 심포지움

42) 남극조약사무국(ATS) 홈페이지 참조(<http://www.ats.aq>)

회차-안건	주요 내용
2-6	정보교환
2-7	과학용 기자재 적재
2-8	International Year of the Quiet Sun (1964-65)
2-9	당사국회의 추천
2-10	제 3회 당사국회의
3-1	비행기 이·착륙 관련 시설정보
3-2	사용가능한 피난처 안내
3-3	보급
3-4	차기 회의
3-5	통신
3-6	전문가 회의와 관련된 토의
3-7	승인된 추천 수락
3-8	남극 동·식물 보존을 위한 협약 체결
3-9	남극 동·식물 보존을 위한 잠정적 가이드라인
3-10	남극 동·식물 보존 관련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3-11	원양 해표 및 빙상 동물군 채집
4-1	특별보호구역 : Taylor Rookery
4-2	특별보호구역 : Rookery Islands
4-3	특별보호구역 : Ardery Island and Odbert Island
4-4	특별보호구역 : Sabarina Island, Balleny Island
4-5	특별보호구역 : Beaufort Island, Ross Sea
4-6	특별보호구역 : Cape Crozier, Ross Island
4-7	특별보호구역 : Cape Hallett, Victoria Land
4-8	특별보호구역 : Dion Islands
4-9	특별보호구역 : Green Island
4-10	특별보호구역 : Byers Peninsula
4-11	특별보호구역 : Cape Shirreff

회차-안건	주요 내용
4-12	특별보호구역 : Fildes Peninsula
4-13	특별보호구역 : Moe Island
4-14	특별보호구역 : Lynch Island
4-15	특별보호구역 : Southern Powell Island and adjacent islands
4-16	특별보호구역 : Fur Seals
4-17	특별보호구역 : Ross Seals
4-18	동·식물군 보조 조치 수행을 위한 협력
4-19	합의사항 수행에 관한 협력
4-20	남극 동·식물 보존을 위한 잠정적 가이드라인
4-21	남극바다표범 보호를 위한 자발적 규제에 관한 잠재적 가이드라인
4-22	남극 해표 관련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4-23	정보교환 일정
4-24	전문가 회의
4-25	물자보급 관련 회의
4-26	통신
4-27	남극여행의 영향
4-28	차기 회의
5-1	기념우표 발행
5-2	남극내 통신 개선 조치
5-3	남극해(남빙양)
5-4	역사적 기념
5-5	특별보호구역 : Fildes Peninsula
5-6	합의사항 수정
5-7	해표에 대한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지침 개선안
5-8	남극 해표에 대한 규제안 검토
5-9	6차 협의당사국회의

회차-안건	주요 내용
6-1	남극 통신
6-2	통신시설에 대한 정보 교환
6-3	남극 기상학
6-4	남극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6-5	남극내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6-6	남극내 연구에 있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에 대한 협력
6-7	남극조약지역내 관광객 및 비정부기구의 영향
6-8	특별보호구역 진입에 대한 허가
6-9	동식물군 보존을 위한 데이터
6-10	특별보호구역 : Coppermine Peninsula, Robert Island
6-11	새로운 섬
6-12	과학연구로켓
6-13	해양학 연구에 대한 정보 교환
6-14	역사적 기념
6-15	7차 협의당사국회의
7-1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7-2	특별보호구역 검토
7-3	특별과학연구 지역
7-4	남극조약지역에 대한 관광객 및 비정부기구의 영향
7-5	실험실 동식물 반입
7-6	남극내 자원탐사의 영향
7-7	남극 통신
7-8	교통 협력
7-9	역사적 기념
8-1	특별보호구역 : Litchfield Island
8-2	특별보호구역 검토
8-3	특별과학연구 지역

회차-안건	주요 내용
8-4	특별과학연구 지역에 대한 잠재적 지침
8-5	특별보호구역 출입 허가
8-6	정보 교환
8-7	운수송 협력
8-8	비협의당사국 활동
8-9	남극조약지역에 대한 관광객 및 비정부기구의 영향
8-10	남극해양생물자원
8-11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8-12	핵폐기물 처리
8-13	남극 환경
8-14	남극내 자원탐사 영향
9-1	남극 광물자원
9-2	남극 해양생물
9-3	남극내 통신시설 개선
9-4	운수송망 협력
9-5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9-6	기름오염이 남극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10-1	남극 광물 자원
10-2	남극해양생물
10-3	남극 기후데이터 분포 및 남극내 통신시설 개선
10-4	남극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지질학 정보 수집
10-5	남극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특수과학연구지역에 대한 잠재적 지침
10-6	남극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 특수과학연구지역
10-7	기름오염이 남극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10-8	남극조약지역에 대한 관광객 및 비정부기구의 영향
10-9	남극조약 20주년 기념식



회차-안건	주요 내용
11-1	남극 광물 자원
11-2	남극 해양 생물
11-3	Mount Erebus 공기 오염
12-1	남극 기후 데이터 수집 및 배포
12-2	남극 통신
12-3	남극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12-4	남극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 남극 탐사대 및 기지 활동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절차
12-5	특별과학연구지역 : Site 1-8 기간연장에 대한 논의
12-6	남극 조약 체제 운영
12-7	역사 유적지 및 기념
12-8	협의당사국들에 대한 SCAR 자문
13-1	남극조약 운영에 대한 정보
13-2	남극조약 운영에 대한 개관
13-3	남극조약에 부합하는 정보의 연간 교환
13-4	남극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 남극 탐사대 및 기지 활동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절차
13-5	남극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 추가 보호 협의사항
13-6	과학연구시설 : 기지 위치
13-7	과학연구시설 : 특별과학연구지역 : 잠재적 지침
13-8	과학연구시설 : 특별과학연구지역 : 잠재적 지침 : 추가 지역
13-9	과학연구시설 : 특별과학연구지역 : 잠재적 지침 : SSI No 1 : Cape Royds, Ross Island : 관리계획 개정
13-10	특별보호구역 : North Coronation Island, South Orkney Islands
13-11	특별보호구역 : Lagotellerie Island, Marguerite Bay

회차-안건	주요 내용
13-12	특별보호구역 : 'New College Valley', Caughley Beach, Cape Bird, Ross Island
13-13	특별보호구역 No 7 : Cape Hallett, Victoria Land : extension of boundaries
13-14	특별보호구역 : interim guidelines
13-15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옵저버들의 임명 문제
13-16	역사적 유적지 및 기념
14-1	남극조약 운영 : 협의당사국 회의자료에 대한 공개
14-2	남극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 환경영향평가
14-3	남극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 과학연구를 위한 시추작업에 대한 안전망
14-4	과학연구시설 : 특별과학연구지역 : 잠재적 지침 : 지정기한 연장
14-5	과학연구시설 : 특별과학연구지역 : 잠재적 지침 : 추가 지정
14-6	특별과학연구 해양연구지역
14-7	남극기후학 및 통신
14-8	역사적 유적지 및 기념비
14-9	남극내 항공 안전
14-10	남극조약내 남빙양 지역 항해를 위한 해양기후 및 해빙정보 제공
15-1	남극환경과 그에 수반된 생태계시스템 보호를 위한 조치
15-2	남극환경과 그에 수반된 생태계시스템 보호를 위한 조치
15-3	남극내 인간활동의 영향 : 쓰레기 투척
15-4	남극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 해양오염 대응
15-5	남극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 남극환경 감시
15-6	남극보호구역 : 추가 특별과학연구지역 No.29,30,31
15-7	남극보호구역 : 보호구역: 보호구역 No.11 연장, Cape Shirreff 을 특별보호구역 No.32로 지정
15-8	남극보호구역 : 남극 동-식물군 보존을 위한 합의사항: amendment to Article VIII(특별보호구역관리계획)

회차-안건	주요 내용
15-9	남극보호구역 : 특별보호구역 관리 방안 및 개선안 개발
15-10	남극보호구역 : 특별보존구역 지정(SRAs)
15-11	남극보호구역 : 다용도 활용 지역 지정(MPAs)
15-12	남극보호구역 : 새로운 유적지 및 기념비
15-13	남극보호구역 : 유적지 및 기념비(Amendment to description of HM 53)
15-14	국제 과학 연구 협력 : 선언
15-15	국제 과학연구 협력 증진
15-16	과학연구시설 : 남극연구데이터에 대한 가용성 및 접근성
15-17	과학연구시설 : 과학기지 위치
15-18	남극내 항공 및 항해를 위한 기후, 해빙정보서비스 관련 협력
15-19	남극 수자원 수위도 차트 작성에 대한 협력
15-20	남극내 항공 안전
15-21	남극 빙하 사용
15-22	남극조약 21주년 기념실 및 기념우표 간행
16-1	정보 교환
16-2	남극 보호구역 및 신규 특별과학연구지역
16-3	남극 보호구역 및 신규 특별과학연구지역
16-4	남극 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 No. 21
16-5	남극 보호구역, 특별과학연구지역 No. 6 관리방안 수정
16-6	남극 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 관리방안 조문 수정
16-7	남극 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 기간 연장
16-8	남극 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 No. 22
16-9	남극 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 No. 23
16-10	남극 보호구역, 남극조약을 위한 환경보호협약 검토 : 지역 보호 및 관리
16-11	남극보호구역, 역사 유적지 및 기념비
16-12	남극 지구물리학 데이터 접근

회차-안건	주요 내용
16-13	남극지역내 관광 및 비정부기구활동
17-1	환경 감시 및 데이터 관리
17-2	특별보호구역 관리 계획 수정
17-3	남극보호구역 : 역사 유적지 및 기념비
17-4	남극내 세계기후변화(Global change) 연구 및 국제공동연구
18-1	관광 및 비정부기구 활동
19-M 1	특별보호구역 관리계획 개정
19-M 2	특별과학연구지역 관리를 위한 계획 개정
19-M 3	남극보호구역 : 특별보호구역
19-M 4	남극보호구역 : 새 유적지 및 기념비
19-M 5	유적지 및 기념비 : 개정
19-D 1	조치, 의사결정, 대안
19-D 2	절차규정 개정
19-R 1	남극해 수위 조사 및 차트 작성에 대한 협력 강화
19-R 2	핵폐기물 방치
19-R 3	관광객 및 비정부기구 활동 보고
19-R 4	연료저장 및 운용
19-R 5	남극 조사단 체크리스트
19-R 6	환경영향평가 : 정보교환
19-R 7	특별과학연구지역 지정에 대한 기간 연장
19-R 8	신 유적지 및 기념비 : 유적지 지정을 위한 지침
19-R 9	관리계획의 단일화 모델
20-M 1	특별과학연구지역 관리 계획 개정
20-M 2	남극보호구역 : 신 유적지 및 기념비
20-R 1	대안 5에 포함된 체크리스트에 “Permanent Antarctic Stations and Associated Installations” 항목 추가

회차-안건	주요 내용
20-R 2	남극의 미
20-R 3	특별과학연구지역 지정에 대한 기간 연장
20-R 4	유적지 및 기념비의 효과적 보존 및 관리
20-R 5	남극보호구역 고유번호 재조정
21-M 1	남극보호구역 : SPA 5 Beaufort Island 특별보호구역 관리 계획 개정
21-M 2	남극보호구역 : 특별보호구역 관리계획, Number 25 Cape Evans 유적지 및 환경. Number 26 Lewis Bay Tomb
21-M 3	남극보호구역 및 특별과학연구지역 관리방안
21-M 4	남극보호구역 : 유적지 및 기념비 : Memorial Cross, Lewis Bay, Ross Island
21-M 5	남극보호구역 : 유적지 및 기념비 : Amendment Number 41: Stone Hut on Paulet Island
21-D 1	절차규정 개정
21-D 2	협의상태
21-R 1	비상시 대응계획
21-R 2	포괄적 환경 평가(CEE): 포괄적 환경평가지 활동계획 검토에 대한 방법론
21-R 3	남극내 관광객 및 비정부기구에 대한 사전보고 및 경고에 대한 일반 서식
22-M 1	남극보호구역 : 특별보호구역 관리계획, Number 27: Cape Royds 유적지 및 주변환경 Number 28: Hut Point 유적지 Number 29: Cape Adare 유적지 및 주변환경
22-M 2	남극보호구역: 유적지 및 기념비, South-West Coast of Elephant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
22-D 1	남극조약 10조에서 불가리아의 자격취득에 관한 확인
22-D 2	환경보호 위원회에 대한 절차 규정
22-D 3	책임 및 의무
22-D 4	해양 보호 구역
22-R 1	Annex V: 보호 구역
22-R 2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 준비를 위한 지침

회차-안전	주요 내용
22-R 3	국제해양 선박 안전을 위한 국제 코드
22-R 4	남극 데이터 관리
22-R 5	ATCM 웹사이트
22-R 6	비상시 대응계획
23-M 1	남극보호구역 : 특별과학연구지역 No. 23: Svarthamaren 관리 방안 개선안
23-D 1	CEP 웹사이트
23-D 2	남극 선박 및 관련활동 관련 지침
23-R 1	남극내 환경영향평가 지침
23-R 2	환경보호협약 대상 특별보호종 목록
23-R 3	남극해양생물보호자원보존협의회(CCAMLR)
23-R 4	환경보호협약을 위한 당사자간 협력
23-R 5	SCAR 및 COMNAP의 자문
23-R 6	비협약당사국들의 환경보호협약 준수
12-M 1	남극보호구역 : 특별보호구역과 특별과학연구지역 관리방안 개선안
12-M 2	남극보호구역 : 특정 특별과학연구지역 지정 기간 연장
12-D 1	환경보호위원회 옵저버
12-R 1	환경보호협약을 위한 기본틀 집행에 관한 지침
12-R 2	남극해양생물보호자원보존협의회 지원 및 불법 조업행위 대응 조치
24-M 1	남극보호구역 : 유적지 및 기념비 : “A Hut”, Scott Base, Ross Sea Region
24-M 2	남극보호구역 : 유적지 및 기념비 : Ruins of the Base Pedro Aguirre Cerda, Pendulum Cove, Deception Island
24-M 3	남극보호구역 : 특별과학연구지역 지정기한 연장
24-D 1	상설 사무국 위치
24-D 2	CEP 문서 처리 및 배포에 관한 지침
24-D 3	지속성

회차-안건	주요 내용
24-R 1	조치, 의사결정, 대안에 대한 총괄표
24-R 2	남극해양생물보호자원보존협의회 지원 및 불법 조업·행위 대응 조치
24-R 3	남극내 유성 채취
24-R 4	유적지 및 기념비
24-R 5	1958년 이전 역사유적 활용에 대한 지침
24-R 6	정보교환
25-M 1	남극보호구역 : 특별보호구역 관리계획
25-M 1-1	ASPА No. 106 CAPE HALLETT, NORTHERN VICTORIA LAND, ROSS SEA
25-M 1-2	ASPА No. 107 EMPEROR ISLAND, DION ISLANDS, MARGUERITE BAY, ANTARCTIC PENINSULA
25-M 1-3	ASPА No. 108 GREEN ISLAND, BERTHELOT ISLANDS, ANTARCTIC PENINSULA
25-M 1-4	ASPА No. 117 AVIAN ISLAND, MARGUERITE BAY, ANTARCTIC PENINSULA
25-M 1-5	ASPА No. 121 CAPE ROYDS, ROSS ISLAND
25-M 1-6	ASPА No. 123 BARWICK and BALHAM VALLEYS, SOUTH VICTORIA LAND
25-M 1-7	ASPА No. 124 CAPE CROZIER, ROSS ISLAND
25-M 1-8	ASPА No. 126 BYERS PENINSULA, LIVINGSTON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
25-M 1-9	ASPА No. 130 TRAMWAY RIDGE, MT. EREBUS, ROSS ISLAND
25-M 1-10	ASPА No. 137 NORTHWEST WHITE ISLAND, McMURDO SOUND
25-M 1-11	ASPА No. 147 ABLATION VALLEY AND GANYMEDE HEIGHTS, ALEXANDER ISLAND
25-M 1-12	ASPА No. 148 MOUNT FLORA, HOPE BAY, ANTARCTIC PENINSULA
25-M 1-13	ASPА No. 157 BACKDOOR BAY, CAPE ROYDS, ROSS ISLAND
25-D 1	남극 내 특별보호구역 명칭 및 고유번호 부여

회차-안건	주요 내용
25-D 2	남극조약 엠블럼
25-D 3	ATCM 권고 현황
25-R 1	남극내 종 보존 현황 검토
25-R 2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안
25-R 3	남극해양생물자원보호협의회 지원 및 불법 조업·행위 대응 지침
26-M 1	남극조약 사무국
26-M 2	남극보호구역 : 특별보호구역 관리방안
26-M 2-1	ASPANo 105, Beaufort Island, Ross Sea
26-M 2-2	ASPANo 114, Northern Conronation Island, South Orkney Islands
26-M 2-3	ASPANo 118, Cryptogam Ridge, Mt Melbourne, North Victoria Land and summit of Mt Melbourne, North Victoria Land
26-M 2-4	ASPANo 135, North-East Bailey Peninsula, Budd Coast, Wilkes Land
26-M 2-5	ASPANo 143, Marine Plain, Bule Peninsula, Vestfold Hills, Princess Elizabeth Land
26-M 2-6	ASPANo 152, Western Bransfield Strait, Antarctic Peninsula
26-M 2-7	ASPANo 153, Eastern Daullmann Bay, Antarctic Peninsula
26-M 2-8	ASPANo 154, Botany Bay, Cape Geology, Victoria Land
26-M 2-9	ASPANo 156, Lewis Bay, Mount Erebus, Ross Island, Ross Sea
26-M 2-10	ASPANo 160, Frazier Islands, Silkes Land
26-M 2-11	ASPANo 161, Terra Nova Bay, Ross Sea
26-M 3	남극보호구역 : 유적지 및 기념비 목록 갱신
26-D 1	남극조약 사무국 업무분장
26-D 2	Measure 1(2003)에 대한 지역별 집행



회차-안건	주요 내용
26-D 3	남극조약 사무국내 직원 관계
26-D 4	남극조약 사무국 재정 규제
26-D 5	非정부활동 및 관광여행에 대한 전문가 회의
26-R 1	선박 및 요트 운영자에 대한 통보
26-R 2	ATCM 주관 국제극지의 해 지원
26-R 3	남극해양 수위 조사 협력
26-R 4	Albatrosses 및 Petrels 보존
27-M 1	남극보호구역 : 특별보호구역 관리계획
27-M 2	남극보호구역 : 특별보호구역 관리방안
27-M 3	남극보호구역 : 특별보호구역 관리계획 : Cape Denison, Commonwealth Bay, George V Land plaque and monument at India Point and, Humboldt Mountains, Central Dronning Maud Land
27-M 4	남극조약지역 관광 및 비정부활동을 위한 안전 및 우발상황 대응 계획
27-D 1	ATCM 절차규정 개정
27-D 2	남극조약 사무국 재정 고찰
27-D 3	사무총장 임명
27-D 4	북극 및 남극 빙해내 선박 운용 지침
27-R 1	어업활동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강화
27-R 2	남극 조류에 대한 비행기 접근 지침
27-R 3	비정부활동 및 관광 : 당사자간 상호협력 강화
27-R 4	남극조약지역 관광 및 비정부활동을 위한 안전 및 우발상황 대응 계획
27-R 5	정보교환 개선을 위한 분야별 연락그룹 구성
28-M 1	환경보호협약 Annex VI

회차-안건	주요 내용
28-M 2	남극 특별보호구역 - 지정 및 관리계획
28-M 2-1	ASPА 101 - Taylor Rookery, Mac. Robertson Land, East Antarctica
28-M 2-2	ASPА 102 - Rookery Islands, Mac. Robertson Land, East Antarctica
28-M 2-3	ASPА 103 - Ardery Island and Odbert Island, Budd Coast, Wilkes Land, East Antarctica
28-M 2-4	ASPА 119 - Davis Valley and Forlidas Pond, Dufek Massif
28-M 2-5	ASPА 120 - Pointe-G��e
28-M 2-6	ASPА 132 - Potter Peninsula
28-M 2-7	ASPА 133 - Harmony Point
28-M 2-8	ASPА 149 - Cape Shirreff and San Telmo Island, Livingston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
28-M 2-9	ASPА 155 - Cape Evans, Ross Island
28-M 2-10	ASPА 157 - Backdoor Bay, Cape Royds, Ross Island
28-M 2-11	ASPА 158 - Hut Point, Ross Island
28-M 2-12	ASPА 159 - Cape Adare
28-M 2-13	ASPА 163 - Dakshin Gangotri Glacier, Dronning Maud Land
28-M 2-14	ASPА 164 - Scullin and Murray Monoliths, Mac. Robertson Land, East Antarctica
28-M 3	남극특별보호구역 : Deception Island
28-M 3-1	관리계획 ASMA 4 - Deception Island
28-M 3-2	ASMA 140 - Parts of Deception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

회차-안건	주요 내용
28-M 3-3	ASMA 145 - Port Foster, Deception Island
28-M 3-4	HSM 71 보존전략 - Whalers Bay, Deception Island
28-M 3-5	the Deception Island ASMA 4 시설지역 행동 지침
28-M 3-6	Deception Island 방문객 행동수칙
28-M 3-7	Deception Island내 볼케이노 발생시 비상계획 및 탈출 전략
28-M 4	남극 특별보호구역 - 기간 연장
28-M 5	남극유적지 및 기념비 : Lillie Marleen Hut and Amundsen's Tent
28-D 1	환경비상상황시 의무 부칙 6조
28-D 2	우크라이나 협의당사국 인정관련 의사결정
28-D 3	절차 337 규정 개정337
28-D 4	협의당사국 현황
28-D 5	외부 감독 지명
28-D 6	남극조약 사무국 재정 규제 관련 개정
28-D 7	사업프로그램 및 사무국 예산 승인 : 2005~6년 355 사업프로그램
28-D 8	남극내 중유(Heavy Fuel Oil) 사용
28-D 9	남극해양생물보호자원보전협의회 관할 남극보호구역 및 해양생물 보호구역 지정
28-D 10	전자정보교환시스템 설립
28-R 1	환경영향평가 : 정보교류
28-R 2	남극 환경감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침
28-R 3	유류 저장 및 사용
28-R 4	남극 환경영향평가 지침 갱신
28-R 5	방문간들에 대한 대응방안
28-R 6	남극 방문전 보고서 양식
28-R 7	남극내 생물군 전망(Biological Prospecting)

회차-안건	주요 내용
29-M 1	남극 특별보호구역: 계획 및 관리방안
29-M 1-1	ASPANo. 116 - New College Valley, Caughley Beach, Cape Bird, Ross Island
29-M 1-2	ASPANo. 127 - Haswell Island (Haswell Island and Adjacent Emperor Penguin Rookery on Fast Ice)
29-M 1-3	ASPANo. 131 - Canada Glacier, Lake Fryxell, Taylor Valley, Victoria Land
29-M 1-4	ASPANo. 134 - Cierva Point and offshore islands, Danco Coast, Antarctic Peninsula
29-M 1-5	ASPANo. 136 - Clark Peninsula, Budd Coast, Wilkes Land
29-M 1-6	ASPANo. 165 - Edmonson Point, Wood Bay, Ross Sea
29-M 1-7	ASPANo. 166 - Port-Martin, Terre Adé
29-M 1-8	ASPANo. 167 - Hawker Island, Vestfold Hills, Ingrid Christensen Coast, Princess Elizabeth Land, East Antarctica
29-M 2	남극특별관리구역 : 지시 및 관리계획 : Admiralty Bay, King George Island
29-M 3	남극 역사유적지 및 기념 : Rocher du Dé
29-M 4	특별보호종 : Fur Seals
29-D 1	사무국 재정 보고 승인(2004/5 및 2005/6) 및 예산 계획(2006/7) 논의
29-D 2	남극조약지역내 심해 변화
29-R 1	남극조약내 남극해양생물자원보호협약
29-R 2	방문객을 위한 현지 지침 해결
29-R 3	남극조약지역내 Ballast Water 순환
29-R 4	남극 Giant Petrels 보존
30-M 1	Antarctic 특별보호구역: 관리방안 개선Plans
30-M 1-1	ASPANo. 109: Moe Island, South Orkney Islands

회차-안건	주요 내용
30-M 1-2	ASPA No. 129: Rothera Point, Adelaide Island
30-M 2	남극특별관리구역 : 지시 및 관리계획
30-M 2-1	ASMA No 5: Amundsen-Scott South Pole Station, South Pole
30-M 2-2	ASMA No 6: Larsemann Hills, East Antarctica
30-M 3	남극 유적지 및 기념비 : 남극조약 기념비
30-D 1	지역 보호 및 관리와 연계한 조치 현황 보고
30-D 2	사무총장 재신임
30-D 3	외부 감사 지명
30-D 4	사무국 프로그램 및 예산안(2007/8) 승인
30-R 1	관광객들을 위한 현지 지침에 관한 해결책
30-R 2	Southern Giant Petrel <i>Macronectes giganteus</i> 보존
30-R 3	남극내에서의 장기 과학 감시 및 지속적 환경 관찰
30-R 4	남극조약지역내 관광선박
30-R 5	남극조약지역내 관광
31-M 1	ASMA No 7: Southwest Anvers island and Palmer Basin
31-M 2	ASPA No 168: Mount Harding
31-M 3	ASPA No 169: Mount Harding
31-M 4	ASPA No 170: Mount Harding
31-M 5	ASPA 118: Summit of Mount Melbourne 개정
31-M 6	ASPA 123: Barwick and Balham Valleys 개정
31-M 7	ASPA 124: Cape Crozier 개정
31-M 8	ASPA 135: North-east Bailey Peninsula 개정
31-M 9	ASPA 137: North-west White Island 개정
31-M 10	ASPA 138:Linnaeus Terrace 개정
31-M 11	ASPA 154: Botany Bay 개정
31-M 12	ASPA 155: Cape Evans 개정
31-M 13	ASPA 160: Frazier Islands 개정

회차-안건	주요 내용
31-M 14	ASPA 161: Terra Nova Bay 개정
31-D 1	절차 규칙 개정
31-D 2	2006-7년 사무국 재무보고서 및 2008/9년 프로그램 예산 승인
31-D 3	외부감사계약 지명
31-D 4	남극조약 사무국 사무총장 선임
31-D 5	전자 정보교환 시스템: 운영 개시
31-R 1	특별보호구역, 특별관리구역, 유적지 및 기념비 지침 WP발표
31-R 2	관광객 방문 지침
31-R 3	지리환경
31-R 4	특별보호구역, 특별관리구역 검사지침
31-R 5	수로측량
31-R 6	남극조약에서의 해상구조 및 SAR
32-M 1	ASMA 3: Cape Denison 개정
32-M 2	ASMA 7: Southwest Anvers Island and Palmer Basin 개정
32-M 3	ASPA 104: Sabrina Island (관리계획 채택)
32-M 4	ASPA 113: Litchfield Island 개정
32-M 5	ASPA 121: Cape Royds 개정
32-M 6	ASPA 125: Fildes Peninsula 개정
32-M 7	ASPA 136: Clark Peninsula 개정
32-M 8	ASPA 142: Svarthamaren 개정
32-M 9	ASPA 150: Ardley Island 개정
32-M 10	ASPA 152: Western Bransfield Strait 개정
32-M 11	ASPA 153: Eastern Dallmann Bay 개정
32-M 12	ASPA 162: Mawson's Huts 개정
32-M 13	ASPA 171 (Narębski Point)
32-M 14	남극 유적지 및 기념비: 83 (Base "W") and 84 (Hut at Damoy Point)104
32-M 15	여객선박 상륙

회차-안건	주요 내용
32-M 16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2부속서 개정
32-D 1	기후변화 전문가 그룹 회의
32-D 2	외부감사 계약 지명
32-D 3	제출지침서 수정
32-D 4	2007/8 사무국 재무보고서 및 2009/10 프로그램 예산 승인
32-D 5	사무총장 신임
32-D 6	CEP 운영 개정 규칙
32-D 7	선박관광 전문가그룹 회의
32-D 8	UNFCCC 서신
32-R 1	남극 수렴선까지의 환경 보호 강화
32-R 2	COMNAP의 위치와 역할
32-R 3	남극 유적지 및 기념비: 지정 지침
32-R 4	관광객 방문 지침
32-R 5	바다제비 보호
32-R 6	국제 극지의 해(IPY) 유산 보존소
32-R 7	남극 관광 일반 원칙
32-R 8	남극 선박 코드
32-R 9	남극 생물 자료의 수집 및 사용
33-M 1	ASPANo. 101: Taylor Rookery, Mac.Robertson Land 개정
33-M 2	ASPANo. 102: Rookery Islands, Holme Bay, Mac.Robertson Land 개정
33-M 3	ASPANo. 103: Ardery Island and Odber Island, Budd Coast, Wilkes Land 개정
33-M 4	ASPANo. 105: Beaufort Island, McMurdo Sound, Ross Sea 개정
33-M 5	ASPANo. 106: Cape Hallett, Northern Victoria Land, Ross Sea 개정
33-M 6	ASPANo. 119: Davis Valley and Forlidas Pond, Dufek Massif, Pensacola Mountains 개정

회차-안건	주요 내용
33-M 7	ASPA No. 139: Biscoe Point, Anvers Island, Palmer Archipelago 개정
33-M 8	ASPA No. 155: Cape Evans, Ross Island 개정
33-M 9	ASPA No. 157: Backdoor Bay, Cape Royds, Ross Island 개정
33-M 10	ASPA No. 158: Hut Point, Ross Island 개정
33-M 11	ASPA No. 159: Cape Adare, Borchgrevink Coast 개정
33-M 12	ASPA No. 163: Dakshin Gangotri Glacier, Dronning Maud Land 개정
33-M 13	ASPA No. 164: Scullin and Murray Monoliths, Mac.Robertson Land 개정
33-M 14	ASMA No. 7: Southwest Anvers Island and Palmer Basin 개정
33-M 15	남극 유적지 및 기념비: 맥머도기지의 원자력발전소 기념비
33-D 1	남극조약체제 주요 문서 편집
33-D 2	사무국 보고: 프로그램 및 예산
33-D 3	환경보호위원회 절차 개정규칙
33-D 4	환경비상상태에서 발생하는 책임
33-D 5	UNFCCC, IPCC, WMO, IMO에 보내는 SCAR ACCE 보고서 서신
33-R 1	관광객 방문 지침
33-R 2	남극조약구역의 수로학에 대한 IPY의 기여
33-R 3	남극 검사 점검 표 “A” 개정
33-R 4	SCAR 남극기후변화 및 환경 보고서
33-R 5	IMO에서 고려중인 남극조약당사자 간의 조화
33-R 6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해상구조수색 관련 협동 향상
33-R 7	남극조약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의 상태제어기술 향상에 관련 협정 체결
34-M 1	ASPA No 116: New College Valley, Caughley Beach, Cape Bird, Ross Island 개정
34-M 2	ASPA No 120: Pointe-Géologie Archipelago, Terre Adélie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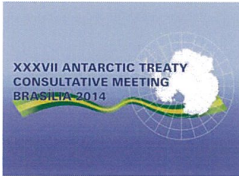
회차-안건	주요 내용
34-M 3	ASPА No 122: Arrival Heights, Hut Point Peninsula, Ross Island 개정
34-M 4	ASPА No 126: Byers Peninsula, Livingston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 개정
34-M 5	ASPА No 127: Haswell Island 개정
34-M 6	ASPА No 131: Canada Glacier, Lake Fryxell, Taylor Valley, Victoria Land 개정
34-M 7	ASPА No 149: Cape Shirreff and San Telmo Island, Livingston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 개정
34-M 8	ASPА No 165: Edmonson Point, Wood Bay, Ross Sea 개정
34-M 9	ASPА No 167: Hawker Island, Vestfold Hills, Ingrid Christensen Coast, Princess Elizabeth Land, East Antarctica 개정
34-M 10	ASMA No 2: McMurdo Dry Valleys, Southern Victoria Land 개정
34-M 11	유적지 및 기념비: 남극 조약 기념비 및 명판
34-M 12	유적지 및 기념비: 제1 Grate wall station 건설
34-D 1	최근의 Measure(조치) 들의 지정
34-D 2	환경보호위원회 개정 규칙(2011): 제안 지침, ATCM, CEP 번역 및 문서
34-D 3	사무국의 프로그램 및 예산 보고
34-R 1	“환경보호에 관한 의정서” 지원 강화
34-R 2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 계획 개정
34-R 3	남극 관광객에 대한 일반 지침
34-R 4	관광객 방문 지침
34-R 5	특별관리구역, 유적지 및 기념물에 관한 WP 발표
34-R 6	남극 비고유종
35-M 1	ASPА No 109: Moe Island, South Orkney Islands 개정 관리 규정
35-M 2	ASPА No 110: Lynch Island, South Orkney Islands 개정 관리 규정

회차-안건	주요 내용
35-M 3	ASPA No 111: Southern Powell Island and adjacent islands, South Orkney Islands 개정 관리 규정
35-M 4	ASPA No 112: Coppermine Peninsula, Robert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 개정 관리 규정
35-M 5	ASPA No 115: Lagotellerie Island, Marguerite Bay, Graham Land 개정 관리 규정
35-M 6	ASPA No 129: Rothera Point, Adelaide Island 개정 관리 규정
35-M 7	ASPA No 133: Harmony Point, Nelson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 개정 관리 규정
35-M 8	ASPA No 140 (Parts of Deception Island 개정 관리 규정
35-M 9	ASPA No 172: Lower Taylor Glacier and Blood Falls, Taylor Valley, McMurdo Dry Valleys, Victoria Land 개정 관리 규정
35-M 10	ASPA No 4: Deception Island 개정 관리 규정
35-M 11	남극 유적지 및 기념비: No 4, No 7~No 11
35-D 1	현재 운영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조치
35-D 2	프로그램 및 예산에 대한 사무국 보고서
35-D 3	ATCM 의 Multi-Year 전략적 업무 계획에 대한 개발
35-D 4	전자 정보교환 시스템
35-R 1	환경 보호 의정서 지원 강화
35-R 2	남극조약 지역에서의 활동 관련 문의에 대한 협력
35-R 3	남극에서의 협력 개선
35-R 4	관광객 방문 지침
35-R 5	Barrientos Island - Aitcho Islands 방문자 지침
35-R 6	남극 생물지리학적 보존 지역
35-R 7	남극조약 지역 내의 선박 안전
35-R 8	해상, 육상, 항공에서의 SAR 협력 강화
35-R 9	육지탐험대 활동 평가
35-R 10	요트 지침
35-R 11	방문자 현장 활동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회차-안건	주요 내용
36-M 1	ASPA No 108: Green Island, Berthelot Islands, Antarctic Peninsula 개정 관리 규정
36-M 2	ASPA No 117: Avian Island, Marguerite Bay, Antarctic Peninsula 개정관리규정
36-M 3	ASPA No 123: Barwick and Balham Valleys, Southern Victoria Land 개정관리규정
36-M 4	ASPA No 132: Potter Peninsula, King George Island (Isla 25 de Mayo), South Shetland Islands 개정관리규정
36-M 5	ASPA No 134: Cierva Point and offshore islands, Danco Coast, Antarctic Peninsula 개정관리규정
36-M 6	ASPA No 135: North-east Bailey Peninsula, Budd Coast, Wilkes Land 개정관리규정
36-M 7	ASPA No 137: Northwest White Island, McMurdo Sound 개정관리규정
36-M 8	ASPA No 138: Linnaeus Terrace, Asgard Range, Victoria Land 개정관리규정
36-M 9	ASPA No 143: Marine Plain, Mule Peninsula, Vestfold Hills, Princess Elizabeth Land 개정관리규정
36-M 10	ASPA No 147: Ablation Valley and Ganymede Heights, Alexander Island 개정관리규정
36-M 11	ASPA No 151: Lions Rump, King George Island (Isla 25 de Mayo), South Shetland Islands 개정관리규정
36-M 12	ASPA No 154: Botany Bay, Cape Geology, Victoria Land 개정관리규정
36-M 13	ASPA No 156: Lewis Bay, Mount Erebus, Ross Island 개정관리규정
36-M 14	ASPA No 160: Frazier Islands, Windmill Islands, Wilkes Land, East Antarctica 개정관리규정
36-M 15	ASPA No 161: Terra Nova Bay, Ross Sea 개정관리규정
36-M 16	ASPA No 170: Marion Nunataks, Charcot Island, Antarctic Peninsula 개정관리규정
36-M 17	ASPA No 173: Cape Washington and Silverfish Bay, Terra Nova Bay, Ross Sea 개정관리규정
36-M 18	남극 유적지 및 기념비: 독일의 "Georg Forster
36-M 19	남극 유적지 및 기념비: Kudryashov 교수의 Drilling Complex Building

회차-안건	주요 내용
36-M 20	남극 유적지 및 기념비: Summit Camp
36-M 21	남극 유적지 및 기념비: Camp E
36-D 1	체코의 협의당사국 가입 인정
36-D 2	사무총장 재신임
36-D 3	사무국 외부감사 재계약
36-D 4	프로그램 및 예산 관련 사무국 보고
36-D 5	ATCM의 Multi-Year 전략적 업무 계획
36-D 6	관광 및 비정부기구 활동에 대한 정보 교환
36-D 7	남극조약사무국을 통한 협의당사국, 옵저버 목록 정보 추가 여부
36-R 1	남극에서의 항공 안전
36-R 2	남극 clean-up 메뉴얼
36-R 3	관광객 방문 지침
36-R 4	남극에서의 SAR 협력 증진
36-R 5	남극의 문화사업 국제 협력
36R 6	생물 보호

## 부록 5. 제37차 회의 IP 제출(남극장보고과학기지 관련)



IP 36

Agenda Item: CEP 8b  
Presented by: Korea (ROK)  
Original: English  
Submitted: 27/03/2014

### **Establishment and Beginning of Pilot Operation of the 2nd Korean Antarctic Research Station “Jang Bogo” at Terra Nova Bay**

1

## Establishment and Beginning of Pilot Operation of the 2<sup>nd</sup> Korean Antarctic Research Station “Jang Bogo” at Terra Nova Bay

### 1. Introduction

The Republic of Korea circulated a/the draf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Evaluation (CEE) for consideration at the CEP in June, 2011. The CEP XIV had concluded that the draft CEE m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 Annex 1 to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Antarctic Treaty and recommended it to the ATCM for endorsement. The final CEE for the Jang Bogo Station was prepared incorporating all the valuable suggestions received from the Parties and was assessed at the CEP XV (IP-23) and ATCM XXXV in June 2012.

The site of the Jang Bogo Station (74°37.4'S / 164°13.7'E) had been chosen through an evaluation process which began in 2006 and considered the national research interests and the suitability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e site is located near Cape Möbius, the coastal area of Terra Nova Bay in Northern Victoria Land along the western Ross Sea.

The station includes a main building, research facilities, and maintenance facilities with a building area of 4,411.46 m<sup>2</sup>. The station is planned to be used for no less than 25 years. It will accommodate up to 15 personnel in the winter and up to 60 personnel in the summer.

After two seasons of construction, the 2<sup>nd</sup> Korean Research Station Jang Bogo was opened by the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PRI) in early 2014. The inauguration ceremony took place at the Jang Bogo Station accompanied by nation-wide interest on 12 February 2014.



Figure 1: Inauguration ceremony held in front of the main building of the Jang Bogo station on 12 February 2014



## 2. Progress during the season 2013/14

### 2.1 Transportation

MV *DANUBE*, an ice strengthened cargo ship, was mobilized for transport of materials and equipment for the second phase of the construction activity from Pyeongtaek Port in Korea to the construction site in Terra Nova Bay, Antarctica. The ship left Pyeongtaek Port with 13,188 m<sup>3</sup> of bulk cargo and 327 containers on 27 October 2013. She stopped in Hobart for bunker MGO fuel for the leg to Terra Nova Bay and Antarctic diesel oil (SAB) for the station operation. The icebreaker RV *ARAON* with 148 construction workers on board left Lyttleton Harbour for the Antarctic on 15 November 2013. The two ships joined at the heavy sea ice edge near 65° S on 26 November and the *ARAON* assisted the cargo ship to access Terra Nova Bay. The cargo ship approached Terra Nova Bay and stopped at the fast ice 1 km offshore from the construction site on 7 December. Unloading began after checking with the sea ice safety and the operation continued for 13.5 days in three-shifts around the clock.

The air-borne transportation of the construction personnel were supported by the Italian, New Zealand and USA Antarctic programs. Thanks to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the Ross Sea Area, the construction team could start the second phase of the construction as early as 31 October 2013. During peak times 287 personnel were employed at the site.

The 49 bulk of returning cargo, mainly comprised of heavy vehicles and construction power plant and 562 TEU containers including parts of construction camp containers were loaded on the cargo ship. The rest of the containers will be transported next season, 2014/2015.

### 2.2 Construction works

Once the additional construction camp for the second phase was set up, construction was carried out in a planned manner. Virtually all of the planned works has been completed and the remaining work including interior refurbishment will be finished in the austral summer of 2014/2015 (Figure 2).



Figure 2: The Jang Bogo Station with *ARAON* in Terra Nova Bay on 28 February 2014

On 15 March 2014, the station was handed over to the first team of 17 members (including 2 construction personnel for pilot operation) wintering at the Jang Bogo Station.

**2.3 Waste treatment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Construction and domestic wastes were collected separately for recycling and reuse if possible. One hundred and twenty-seven 20ft containers with wastes were removed from the site by the cargo ship.

Additional IC-SBR system was installed and two systems were in operation for wastewater treatment during the 2<sup>nd</sup> construction period. The discharged water quality (BOD, COD, SS, pH, T-P and number of coliform) was checked every two days.

To avoid anthropogenic disturbance to the colony of south polar skua located in the eastern hill of the Gondwana Station, unnecessary visiting by either construction workers or other personnel were strictly controlled and restricted. Low altitude flying of helicopters over the colony was also strictly prohibited. Two ornithologists monitored the colony for one month to observe the impacts. The damaged area by oil spill which occurred last season was monitored by KOPRI's environmental monitoring team and the initial assessment indicated no visible impacts. The area will continue to be monitored for further assessment.

An environmental audit and review of the CEE will be carried out by the KOPRI Environmental monitoring team during the 2014/2015 season.



**Figure 3:** IC-SBR system for waste water treatment during construction period and a signpost notifying the restricted area to protect the south polar skua colony

**2.4 Accident**

Regrettably, a helicopter (Kamov-32) fire accident occurred while the vehicle set down on the *ARAON* on 4 December 2013. Fire was extinguished quickly and prevented from spreading, with no visible damage to the ship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with minimal impact to the construction schedule. Best efforts were made to contain the inciden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guidelines. Eleven personnel (including 2 pilots) on board all managed to escape. Those more badly affected were flown out of the Antarctic with invaluable support from the Mario Zucchelli and McMurdo Stations and received necessary medical attention. The burnt down helicopter was transported to Christchurch by the *ARAON*.



**3. The Jang Bogo Station facilities**

The triple-arm shaped central main building connects to individual facilities in a radial arrangement. The station layout is intended not only to provide safety, functionality, and efficiency, but also to limit land usage. Major facilities are composed of research facilities, a power plant, maintenance and storage buildings, waste treatment facilities, communication antennas and observatories. Further information on the facilities of the Jang Bogo Station is provided in the fi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Evaluation which was presented at the ATCM XXXV (I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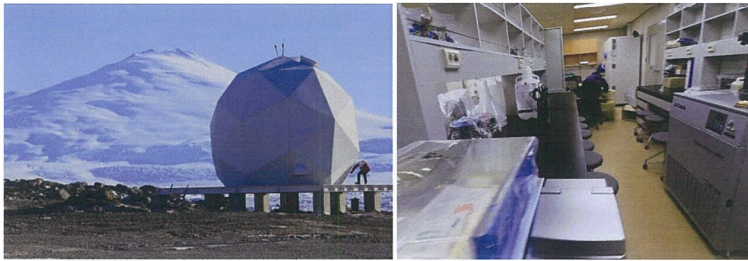


Figure 4: Satellite antenna for communication and an interior view of the Life science & Oceanographic laboratory



Figure 5: An Aerial view of the Jang Bogo Station before loading the construction camp containers

#### **4. Science at the Jang Bogo Station**

Science at the Jang Bogo Station will provide crucial information in understanding the global system. Climate and atmospheric chemistry, tectonic and geophysics, Antarctic ionosphere and thermosphere monitoring, long-term monitoring for ocean and ecosystem, and meteorology are some of the topics that will be studied. However, there is currently no permanent observatory for continuous observation within at least 300 km radius of the Jang Bogo Station. The sea-level monitoring of greenhouse gases at the station will operate as a permanent WMO/GAW and is expected to add valuable resources of atmospheric compositions. As the Jang Bogo Station lies within the aurora zone, it is ideally situated for space weather studies.

A new comprehensive Jang Bogo research project is about to be launched with the support of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science collaborations are already underway during construction periods with the Antarctic research programs of Germany, Italy,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 **5. Acknowledgement**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grateful to all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partners who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e Jang Bogo project over the years. First of all we highly appreciate the work done by the construction consortium as well as the scientists and staff of KOPRI and other supporters during the period.

The very successful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air-borne and ship-borne transportation was a vital part of the construction project. We thank the master and crew of *MV SUOMIGRACHT*, *MV DANUBE*, and *R/V ARAON*.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Russian experts shared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for sea ice safety.

Special thanks are due to our neighbours at the Italian Mario Zucchelli Station and American McMurdo Station for their unwavering support whenever it became necessary. Here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thanks to all the Parties for their assistance as well.





- ◎ 이 자료집은 극지연구소에서 발간한 것으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의 설명과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 ◎ 이 자료집이 남극 과학연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분들께 참고 자료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KOPRI**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Tel. (032)770-8424  
<http://www.kopri.re.kr>